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79-01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5월 19일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공동연구원 김연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원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박주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신동욱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시행에 따라 손쉽게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며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
- 법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이 주요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적인 접근 전략을 개발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농업 및 농촌관련 협동조합을 전망하고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의 운영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법제도개선을 통한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과 기존 농협등과의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여 앞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현황 및 전망

- 농업 및 농촌지역과 관련된 협동조합은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약 20% 수준임 (2013.3.31. 기준)
- 신규 설립된 협동조합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하는 협동조합이 전체의 84%정도를 차지하였고, 어매니티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이 11%, 복지·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 5%를 차지

- 기존의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한 사업 및 규모를 지닌 조직이 다수를 차지하며 농업생산자단체의 주요유형으로 발전할 전망
- 설문결과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응답이 74.2%로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기존 협동조합 및 농업법인과 같이 신설되는 협동조합을 동등하거나 유사한 법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크게 나타나며(92.4%), 제도개선과 함께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 및 컨설팅과 같은 간접적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 및 인터뷰 결과 농협과의 관계에서 협동조합 간 협력하여야 하지만 사업적으로 경합되는 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3. 농촌에서 활동가능한 협동조합 유형 및 농협과의 관계

- 협동조합의 모델은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는 농업생산 및 유통분야, 둘째는 농촌의 어메니티자원 활용분야, 셋째 농촌사회서비스 분야임
 - 지역의 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우 농협과의 협력을 통한 판매 및 마케팅 분야의 협력이 필요, 농협에서도 현재 판매사업의 핵심조직으로 소규모 생산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함을 통하여 농업생산자의 조직화를 도모, 마을단위의 생산공동체 협동조합을 통하여 마을의 농가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수행 가능

- 농촌관광, 마을개발 등 주민의 참여와 사업이용을 전제로 하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추진하고 협동조합은 시군단위에서 연합회를 구성하여 역할분담을 통한 지역적 사업체계를 구축. 비농업인, 수요자인 일반 도시민도 협동조합에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구성 가능
 - 인구의 과소화 및 마을의 분산으로 인해 복지의 전달체계상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서 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종합복지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정부는 이들 조직에 복지정책 수행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가능
-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협의 역할이 중요함. 첫째,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방법. 둘째,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출, 협동조합육성기금의 조성 등에 지원. 셋째, 기존의 협동조합 경영의 노하우 전수. 넷째, 사업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역할분담을 통하여 상호 취약한 기능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방안임

4.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 법제도정비의 목표는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임. 따라서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한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기존 제도 중 동일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대상 확대 등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
- 협동조합기본법도입에 따른 지역 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도 농림축산식품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
 - 둘째,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도 및 관련사업 제도를 정비하는 것
 - 셋째, 정책적으로 농업 및 농촌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육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 협동조합을 정책대상화 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시하고 있는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방안, ‘농업생산자단체’로 지정하는 방안, 각 정책사업별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 기존 농협 등의 조직과 협력을 위한 사항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정비를 통해 기존 농협과 경합을 방지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
 - 정부의 각종 농업 및 농촌관련 사업에서 사업주체간, 농업인 및 지역주민의 공동의 참여를 요하는 사업에서 주체의 법인화의 유형으로 협동조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및 업무규정상 보완 필요성을 제시
 - 농업 생산영역에서 영농주체의 조직화를 추진하는 부분,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분야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농촌의 복지 등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별로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주체를 활용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함

차 례

제1장 서론 및 연구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 1
- 2. 연구의 개요 5

제2장 농촌지역 협동조합 현황 및 주요쟁점

- 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논의 9
- 2. 기존 농촌지역 협동조직 실태 및 특징비교 20
- 3.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특징 43
- 4. 농촌지역 협동조합에 설립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66
- 5. 기본법상 협동조합설립에 따른 주요쟁점 및 이슈 100

제3장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운영모델

- 1. 농촌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향 111
- 2. 해외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례 117
- 3. 농촌지역에서 가능한 협동조합의 유형 128
- 4. 지역사회의 협동조합간 협력관계 141

제4장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법 및 제도 개선

- 1. 정책 및 법제도 정비의 기본방향 145
- 2. 농촌 조직관련 지원정책 및 법적제도 150
- 3.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정책 대상화 방안 검토 159
- 4.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관련 법·제도정비 방안 186
- 5. 농업분야 정책의 협동조합 활용을 위한 방안 189

제5장 요약 및 결론

1.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방향	197
2.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의 유형별 역할과 기대효과	199
3. 건강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정책제도 개선방안	201

부 록	205
---------------------	------------

참고문헌	215
-------------------	------------

표 차 례

<표 1>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현황(2010년)	10
<표 2>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13
<표 3>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도	15
<표 4> 농업·농촌분야의 경제 조직 현황	21
<표 5> 관련법상 농업관련 조직의 정의 내용	22
<표 6> 농어촌공동체회사 조직형태 현황	25
<표 7> 농어촌공동체회사 유형 현황	26
<표 8> 농업법인의 사업영역 및 농지소유	29
<표 9> 농업법인의 세제혜택	30
<표 10> 농업법인의 세제혜택(계속)	31
<표 11>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조항	32
<표 12> 농업법인 수 증가 추이	33
<표 13> 농업법인의 사업유형별 비중	33
<표 14> 기본법 상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의 법인세율 비교	38
<표 15> 주요 농촌 경제조직간 설립요건의 비교	41
<표 16> 주요 농촌경제조직간 가능사업의 비교	42
<표 17> 주요 농촌경제조직간 농지소유 가능여부	43
<표 18> 주요 농촌경제조직간 구성원의 참여와 책임	44
<표 19>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수리현황	45
<표 20> 지역별 농업 및 농촌관련산업 협동조합 설립현황	46
<표 21> 농촌관련 협동조합의 평균출자금 및 설립동의지수	47
<표 22> 출자금규모별 농업 및 농촌관련산업형 협동조합 수	48
<표 23> 사업의 유형별 농업농촌 협동조합의 현황	49
<표 24>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형 협동조합의 주요사업	49
<표 25> 농촌어메니티 활용분야 협동조합 현황	50
<표 26> 농촌사회서비스분야 협동조합 현황	51

<표 27> 농업분야 및 농촌지역 협동조합 전화인터뷰 대상	52
<표 28> 농어촌 사업체의 협동조합 전환 의향 조사결과	65
<표 29> 응답자의 기본정보 : 직업	68
<표 30> 응답자의 기본정보 : 거주지	68
<표 31> 응답자의 기본정보 : 연령	68
<표 32> 응답자의 협동조합 설립의향	68
<표 33> 협동조합기본법의 인지여부	69
<표 34> 협동조합기본법의 인지여부 (직업별)	70
<표 35> 협동조합의 농촌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동의 정도	70
<표 36> 협동조합의 농촌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동의 정도(직업별)	71
<표 37> 협동조합의 농촌지역사회의 기여점	71
<표 38>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데 겪는 어려움	72
<표 39>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의 방법	73
<표 40> 농업법인과 동일한 혜택부여에 대한 동의정도	74
<표 41> 농업법인과 동일한 혜택부여에 대한 동의정도(직업별)	74
<표 42>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추가하는 방안의 동의정도	75
<표 43> 정책사업 사업대상자로 동등한 여건조성 방안의 동의정도	75
<표 44> 생산자단체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의 동의정도	76
<표 45> 정책적 지원사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	76
<표 46>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의 관계 전망	79
<표 47>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의 추구관계(직업별)	79
<표 48>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의 실제 관계 전망	79
<표 49>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의 관계 교차분석	80
<표 50>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과의 관계에 대한 응답이유	80
<표 51> 협동조합의 기타과제에 대한 의견	87
<표 52> 농업생산분야 설립가능한 법인의 영역 변화	100
<표 53> 협동조합 명칭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조문	106
<표 54> 일본 농업관련 법인의 현황	120
<표 55> 일본 집락영농의 사례 : 사코우토 팜	124

<표 56> 농협의 농지활용 관련 직간접적 사업추진	126
<표 57> 우리나라 농촌에서 실현가능한 협동조합	128
<표 58> 농협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 : 서포항농협	137
<표 59> 농협의 사회적 기여 사례 : 고삼농협	139
<표 60> 농림사업의 주요정책사업 대상	151
<표 61> 농림사업시행지침과 사업대상 현황	151
<표 62> 농림사업시행지침 실시규정	156
<표 63> 정책대상화의 방법 및 추진방안 요약	160
<표 64> 생산자단체의 범위	167
<표 65> 생산자단체의 범위 (고시사항)	168
<표 66> 생산자 단체의 지정방법	168
<표 67> 기존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및 특징	171
<표 68>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설립요건 및 특징(안)	172
<표 69> 농업법인의 사업분류와 협동조합의 구분	173
<표 7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173
<표 71>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정관례 사항 : 명칭	176
<표 72>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정관례 사항 : 목적	177
<표 73> 정책대상화시 검토대상 관련법	178
<표 74> 협동조합의 생산자단체 포함방안	179
<표 75> 협동조합의 농업법인포함에 따른 농지법 개정검토	181
<표 76> 협동조합의 농업법인 포함에 따른 세금감면 제도개선 검토	183
<표 77> 개별법 협동조합의 과세지원제도	183
<표 78> 생산자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의 현황	184
<표 79> 농림사업시행지침상 영농법인의 확인사항	185
<표 80> 농협법의 개선검토 (협동조합간 협동)	186
<표 81> 지역농협의 조합원관련 사업의 내용	187
<표 82> 농협법의 개선검토 (조합원의 자격)	188
<표 83> 지역전략식품사업시 지원자격 및 요건	190
<표 84>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의 활성화방안	191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방향	4
<그림 2>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조	14
<그림 3> 농업법인의 경영의 애로사항 (황의식, 2012)	34
<그림 4> 농촌관련 협동조합의 설립현황과 특징	47
<그림 5> 농업농촌 협동조합의 사업유형별 현황	48
<그림 6>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가능한 법인	108
<그림 7>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	112
<그림 8> 농촌지역 요구를 실행하기위한 고려사항	113
<그림 9> 일본 농업법인의 구성 및 구분기준	120
<그림 10> 일본 집락영농의 기대효과	123
<그림 11> 농업 생산·가공·유통 영역에서의 협동조합 모델	129
<그림 12> 협동조합 정책의 기본방향(기획재정부,2012)	145
<그림 13>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의 기본방향	146
<그림 14> 협동조합정책대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법모색	159
<그림 15> 농업조합법인의 한 유형으로 포함(안)	162
<그림 16> 농업법인의 한 유형으로 포함(안)	162
<그림 17> 영농조합법인도 기본법에 근거하도록 하는 방안	162
<그림 18>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로 협동조합 포함방안	163
<그림 19> 농업법인의 협동조합형태 신설방안	164
<그림 20> 개별적 조건으로 협동조합을 동일 수준인정	165
<그림 21> 협동조합기본법 근거 영농조합 추가 방안	166

제1장 서론 및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기본법 시행에 따른 농업관련 및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설립증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기존의 개별법들에 근거하여 설립이 가능하였는데 각 법에 따라서 제한된 분야에서 제한된 형태의 협동조합만이 설립 가능하였다.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출자금 등 규모에 상관없이 구성원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가 대폭 확대되고, 협동조합의 설립기준도 완화되어 기존의 개별법 하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도 기존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기존의 협동조합 또는 유사한 성격의 조직 외에도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기존 협동조합과의 역할 관계 변화와 협력방안의 필요

현재 농협의 사업 영역인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에 대해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업관련 산업 외에도 농촌지역의 복지, 생활, 여가서비스 등과 같은 협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식품산업·바이오에너지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농협은 농촌지역을 주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종합농협으로서 농촌지역에서 가능한 대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보면 기존 개별법에서 제시하는 업무영역에서도 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현행 개별법에 의한 농협 간에 사업적으로 경합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들이 기존의 협동조합인 농협 등과 같이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농촌지역 전체의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각자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다. 협동조합기본법 영향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2011년 기준 농업인구가 3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낙후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적인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활성화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많은 사업분야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다양한 협

동조합이 출현할 것이다. 이들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 및 농촌지역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 및 관련제도 중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향후 농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존의 협동조합들과 연계되어 사업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농업분야 협동조합 실태를 점검하여 활용가능한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기존의 다양한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운영모형을 제시하고 기존의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신규로 설립되는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들이 농업 및 농촌분야에서 사업운영 시에 기존 정책 및 제도상 불합리한 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다른 유사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기존조직과 동일하게 농림사업 등의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농촌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를 꾀하여 농업 농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협동조합으로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법제도 및 기존조직에 대한 비교분석 등의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현황과 약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에 특징 및 정책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 농업농촌분야의 정책방향 수립

기존 법제도상 정책개선 사항

- 기존 법제도상 불리한점 극복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등 검토
 - 농림관련 법제도상 협동조합기본법과 일치여부
- 농림사업의 협동조합 포함 가능성
 - 농림사업 지원대상화를 위한 법적 검토
 - 법적 지원대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 농업 농촌분야의 협동조합 전망
 - 협동조합 설립 현황 및 전망
 - 농업 농촌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사업모델
-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발굴
 - 활용가능한 농업농촌분야사업모델에 따른 관련정책 탐색 및 제도개선사항 제안

건전한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개선 및 지원기준 마련

<그림 1> 연구의 방향

2. 연구의 개요

2.1. 연구과제의 내용

2.1.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관련 이슈 및 정책수요 분석

농촌지역의 주요 생산자조직인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관련조직의 설립운영 현황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협동조합(농업법인 포함)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조건 등을 비교분석하고 조직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농업·농촌 관련 주요내용 및 사업가능영역을 분석하여 향후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주 사업영역을 제시하고 농촌관련 사업조직 및 사업의 현황과약을 토대로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이슈를 예상해 보았다.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기존 협동조합과의 향후 관계를 전망해 보았다. 또한 농협의 현 사업 실태 및 협동조합의 예상 사업에 따른 경합요인을 분석하고 '협동조합'명칭 사용에 따른 기존 농협 명칭과의 혼동에 따른 갈등요인과 같은 이슈에 대하여도 검토 하였다.

농업경영체 육성 정책 검토 및 기존 정책의 협동조합 관련 사항의 비교를 통하여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시 기존 제도상 정책 지원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였다.

2.1.2. 농촌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및 기존 농협과의 역할 분담 방안

외국의 지역 협동조합 사례를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조직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도 및 정책상 적용가능한 부분도 외국사례를 참고하고자 하였다.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운영모델로 농업생산유통 관련 경제활동 분야의 소규모 생산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모델, 농촌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형 다중이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모델, 주민 복지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모델을 검토하였다.

기존 농협과 역할관계 정립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소규모 협동조합과 농협의 역할분담을 통한 생산자 조직화 방안,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사회적협동조합과 농협의 지역종합센터 역할수행 방안, 농촌지역의 협동조합간 네트워크의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농업경영체 육성,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경영체육성 관련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농협, 농업법인 등 생산자조직과 신규 협동조합의 협력 방안 및 농촌 개발 및 복지분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2.1.3. 연구의 방법

가. 국내 문헌연구 및 외국 협동조합에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현행 국내 법 제도에 대한 자료 및 농업관련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농촌지역 협동조합과 관련된 문헌 및 농업·농촌관련

협동조합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자료(국내논문, 인터넷매체, 단행본)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관련 문헌자료 및 국내외 농업 및 농촌관련 협동조합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나. 농촌지역 이해관계자,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협동조합기본법에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과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화인터뷰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현재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한 사례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시 문제점과 운영상의 개선점에 대한 내용 등을 인터뷰 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가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농촌지역 기본법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8 제1장 서론 및 연구개요

제2장 농촌지역 협동조합 현황 및 주요쟁점

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논의

1.1.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취지 및 내용

1.1.1.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배경

가. 국제적 배경과 국내의 기본법 제정 움직임

2009년 12월 UN 총회에서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이 운영기준인 협동조합의 가치와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주목한 것으로,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완화할 수 있는 것이 제3섹터로서의 협동조합임을 재인식한 것이었다. 또한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 국제노동기구 등은 2000년대에 들어 각국의 협동조합 법제도를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나. 우리나라 협동조합 현황과 개별법체계의 특징과 한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으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8개 유형의 협동조합이 설립가능하였다. 이들 협동조합은 2010년 기준으로 협동조합의 수는 총 8,360개, 조합원수는 약 2,600만 명이다. 이들 협동조합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설립이 가능한데 해당 법률은 각기 다른 연도에 제정되어 현재 법제도의 모습을 이루었으며, 각 법에 따라 규정한 분야에서만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특히 1차 산업분야에서는 농협 등과 협동조합이 성장하였는데 조합원 및 매출액 등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을 만큼 규모면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현황(2010년)

	구 분 (근거법)	설립연도	조합수(개)	조합원수(명)	자산규모 (조원)
1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1961	4,408	2,170,027	201
2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92	158,000	-
3	업연조생산협동조합 (업연조조합법)	1963	19	5,550	-
4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1960	142	489,000	-
5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2	988	71,359	-
6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1960	960	5,790,000	48
7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법제정1982	1,463 (금고수)	16,720,000	26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제정1999	288	630,000	
	합 계		8,360	26,033,936	

자료) 기재부(2012).협동조합 관련 정책자료

그러나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률은 8개의 개별법으로 만들어져 있어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에 몇 가지 저해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복지·주택·교육 분야 등 특별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협동조합 유형이나 특별법의 설립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적 설립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협동조합 설립이라는 협동조합 원칙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이중 협동조합간 공동활동의 근거가 없어, 협동조합간 협동이라는 협동조합 원칙의 실현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협동조합 및 협동문화 진작을 위한 공동활동 전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1.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 및 특징

가. 협동조합 설립 기준 완화

기존 개별법 체계하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제한된 형태의 협동조합만이 설립 가능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하에서는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조합원 5명만으로 설립 가능하다. 이렇듯이 기존의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달리 5인으로 설립인원을 최소화한 것은 소규모 협동조합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다.

나. 협동조합 설립 업종 확대

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1차 산업 및 금융·소비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법 제정 이후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모든 업종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업과 서비스업 등 2차산업 전반과 3차산업 전반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다. 협동조합 유형의 확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그동안은 설립이 불가능했던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어 협동조합을 만드는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 수 있고, 영세자영업자들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농촌지역에서도 농업생산자 협동조합 뿐만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가능하다.

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능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기존의 전통적 협동조합이 주로 조합원의 요구를 사업으로 실행하고, 그 성과를 조합원들이 주로 나누었던 것과 달리,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협동조합이 수행하고, 그 성과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나누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991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해서 세제상의 혜택이나 부과금 면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이나 이용액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고, 사업도 목적사업이 40% 이상 되어야 하며, 해산할 때에는 출자금과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사회로 환원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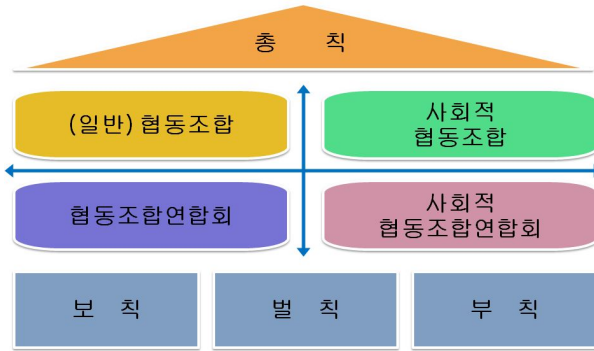
<표 2>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 의무사항
법 정 적 립 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 독	▪ 관련내용 없음 (상법등에서 준용)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1.1.3. 협동조합 기본법의 내용 및 해설

가.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조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협동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 단위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로 세분할 수 있다. 결국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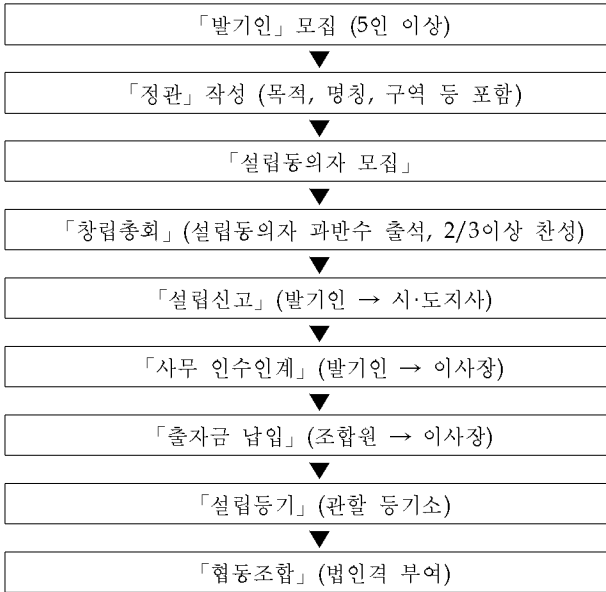
<그림 2>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조

나.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정관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의결,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관할 정부부처 장관에게 인가신청), 이사장에게 사무 인계, 출자금 납입(현물 출자 가능), 설립등기 등 8단계를 거쳐야 한다.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가 아니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성립된다.

기존 협동조합은 모두 설립신고를 한 후 인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 후 인가 절차 없이 등기를 할 수 있다.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인 개인은 물론 주식회사 등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을 포함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설립동의자 최소인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기인 5명이 창립총회를 한 후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해도 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최소 자본금 규정도 없어서 적은 규모의 자본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표 3>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도



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기관 및 임원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이다. 자연인인 개인은 물론 주식회사 등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에 따른 의무와 권리가 부여된다. 보통 조합원은 출자·회의·교육·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대의원이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과 달리, 이사·감사 등 임원

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3개 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며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반드시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조합원 총회의 성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수가 많은 협동조합의 경우는 총회 대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고,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하는데,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라. 협동조합의 사업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 3가지는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협동조합의 사업은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현재 금지되어 있다.

1.2. 농촌지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의 의미

1.2.1. 농촌지역 협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

농촌지역의 협동조합과 관련된 논의는 새로운 기본법을 통한 협동조합의 도입이 아닌 기존의 농협의 역할을 확대하고 소규모 협동조합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을 도입하여 연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협동조합조직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의 마련은 농업계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영농조합법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농협과 영농조합법인과 관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 당시 영농조합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유통하며,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농협의 이사로 연결하자는 논의(김기태,1994)가 이미 제기되었다.

기존 농협의 역할과 관련하여 종합농협이란 조직적 특성 속에서 농민조합원 및 농어촌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농협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국내외적으로 다수 제출되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이란 관점에서 기존의 농업을 지역사회농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주장(한호선 역,1986)도 일찍이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지역농업조직화이론에서도 기존의 읍면단위 일선조합의 규모에서 추진할 수 없는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중심의 새로운 협동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왔다(박광서,1997, 박진도,1993).

이후 일본의 지역농업조직화론과 달리 농협의 시군단위 유통조직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한국적 방식의 지역농업조직화론이 제기되어 일선조합과 연합사업, 농가의 생산조직을 연계하는 논의가 제시되었다.(김기태,2002) 이런 접근전략은 이후 연합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조합공

동사업법인을 농협법에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일선조합과 중앙회의 이원적 구조를 통해 다양한 차원의 사업조직이 설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 발전과 달리 농협과 연계된 생산법인의 논의도 이미 검토되었다. 농협이 투자하고 지원하는 일본의 생산법인 논의가 국내에 소개되었으며(이윤미,2006), 기존의 작목반과 공선출하회의 생산법인화 검토가 농협경제사업활성화의 방안 중에 포함되었다.(농협중앙회,2011)

농업생산과 농산물유통에 대한 농협 이외의 협동조직과의 협력이란 주제와 달리 지역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농협의 확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농협중앙회의 2003년 새농촌새농협 운동선포식 자료에서 처음 제시된 “지역종합센터” 논의는 2007년 발표된 “농협비전 2015”에서도 3대 목표 중 하나로 “지역종합센터”를 제시하고, “조합을 지역사회에서 농촌개발/복지/문화/관광/도농교류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종합센터로 발전시켜, 농촌의 활력과 농외소득 창출”한다고 제시되었다.

이런 농협중앙회의 논의를 발전시켜 기존의 농협은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이용자 소유와 이용자 통제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역종합센터”를 더욱 강조한 논의가 있었으며(김기태,2011), 이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 신자유주의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후 농협의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정리한 논의도 나타났다(이인우 외,2011).

그 외에도 일본의 6차산업화와 농상공연대의 움직임과 농협의 관계에 대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검토한 논의도 있었고,(코야마 료타,2010)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농협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농어촌형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논의가 진행되었다.(유정규, 지역재단 연구자료)

하지만 그동안 이런 다양한 농촌지역의 협동조직을 농협과 연계하는데 협동조합의 연대, 연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기존의 이러한 협동조직들이 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1.2.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영향에 대한 논의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농업 및 농촌지역에서의 협동조합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경영체가 많은 농촌의 지역경제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대규모 자원 등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서 소규모 경영체를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독점적 시장 기업에 대응 할 수 있다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김미복 외, 2012).

삶의 질과 관련하여서도 협동조합은 경쟁력 있는 구매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농촌지역에서 기업이나 공공 부분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모델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2. 기존 농촌지역 협동조직 실태 및 특징비교

2.1. 농업·농촌지역 관련 조직체 현황

농업분야 및 농촌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법인 및 단체가 조직될 수 있다. 우선 농업관련분야 및 농촌지역에서도 민법 및 상법상의 법인들이 설립가능하다. 이미 설립된 법인 가운데서도 설립 목적 및 운영형태가 협동조합과 유사하거나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조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생산조직 및 마을공동체 관련 조직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여 보았다.

2.1.1. 협업적 농업생산자조직의 현황

농촌지역의 농업관련 협업조직으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의 임의 단체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거나 사업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조직의 설립 및 운영 특징에 대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농업 생산자 조직중에서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이 있다. 농협은 농촌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농협외에 현재 농업 생산자 조직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 '농업법인'이라고 불리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이 두 조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

비 법인격 조직으로는 작목반, 생산자회, 영농회 등이 있는 데 이들은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농촌지역에서 많이 조직되어 있는 임의 단체들이다. 작목반 및 공선출화회는 농협에서 특정 작목별로 생산농가의 조직을 위해 도입한 개념이며 공선출화회는 최근에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조직이다.

농업 생산자 조직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언급되고 있다. 해당법에서 일반적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해당하며 일정 조건이상의 법인은 ‘생산자단체’로도 인정된다. 농업협동조합은 ‘생산자단체’에 해당한다. 법에서 ‘생산자단체’를 농업인으로서 자주적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협동조합과 5인 이상의 공동법인을 포함하고 있다. 즉 협동조합 방식의 농업인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4> 농업·농촌분야의 경제 조직 현황

근거법	설립조직	법적정의	법인격	
농업협동조합법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생산자단체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 체	법인	민법상 조합규정준용 상법상 법인규정준용
상법	주식회사		영리법 인	
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법인	
-	작목반 생산자회 공선출화회 영농회 마을협의회		비법인	

기존의 조직과 달리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사업적으로 이들 조직과 유사한 사업을 하거나 동일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나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정책적 지원 및 관련규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하는데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일반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같이 농업분야에 한정된 조직이 아니다.

<표 5> 관련법상 농업관련 조직의 정의 내용

<p><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p> <p>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p> <p>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염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p><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4.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1.2. 농촌지역의 마을공동사업체

가. 마을공동사업체의 개괄 및 특성

초기 마을의 공동사업조직으로는 공동의 영농활동을 중심으로 협업조직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동안 농작업 공동조직,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농산물구매·판매조직 등이 마을의 공동사업조직으로 있었으며 현재에도 마을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개발 관련정책이 마을단위로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마을공동사업체는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특히 마을단위로 지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정호 외, 2010).

최근에 들어 정부는 관련된 정책적으로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고 하며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마을개발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나. 농어촌공동체회사 정책과 조직의 현황

농어촌공동체회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에 농촌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3,000개소를 육성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김정호 외, 2010).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식품부가 농촌지역의 협업적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용어의 정의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농식품부(2012)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농어촌공동체회사를 포함한 농촌 지역의 마을단위 경영체는 2,692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농어촌공동체회사가 720개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852개소, 체험마을을 1,120개소이다.

농어촌공동체회사가 취하고 있는 법인의 형태는 다양하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조직의 형태 중에서 농어업법인이 416개소로 전체 대비 5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임의단체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농업법인을 통한 조직화 및 사업이 가장 많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임의조직 상태로 있는 조직들이 법인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는 이들 조직형태 외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표 6> 농어촌공동체회사 조직형태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11년比 증가율(%)
합계	219	443	720(100)	62.5
민법상 법인·조합	-	-	8(1.1)	-
상법상 회사	12	15	23(3.2)	53.3
농어업법인	100	225	416(57.8)	84.9
비영리민간단체	23	65	64(8.9)	-1.5
임의단체	84	138	209(29.0)	51.4

농식품부(2012),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분석결과

농어촌공동체회사에서는 활동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농식품산업형’과 ‘도농교류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향후 협동조합도 농어촌공동체 회사의 법인형태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사업적으로는 기존의 유형 형태와 유사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기존의 농업법인은 농업생산, 유통을 중심으로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은 농식품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도농교류, 지역개발형 등 에서도 다양하게 설립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표 7> 농어촌공동체회사 유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11년比 증가율(%)
합계	219	443	720(100)	62.5
농식품산업형	54	179	309(42.9)	72.6
도농교류형	78	176	220(30.1)	25.0
사회복지서비스형	31	20	39(5.4)	95.0
지역개발형	24	40	78(10.8)	95.0
복합형	32	28	74(10.2)	164.3

농식품부(2012),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분석결과

2.2. 농업 생산자조직의 특성 및 현황 비교

2.2.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가. 근거법령 및 성격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되어 있다. 동 법률에서는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은 조직의 목적상 협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설립주체 및 출자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농업인 5인 이상이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비농업인의 출자도 가능하다. 조합원 개인의 출자한도는 없으며 비조합원도 동일하다. 농업인의 출자한도는 총출자액의 1/3이내였으나 1999년 폐지되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영농조합법인도 초기에는 협동조합의 협력적 모델을 중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1ha 미만의 농지소유자로 제한하고 조합원의 출자규모도 제한하였지만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자격 및 출자제한을 풀어줌으로써 설립 및 규모화가 용이하게 하고자 하여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¹⁾. 또한 개정과정에서 비농업인이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총 출자액의 제한을 없앴으로서 참여주체가 초기보다 확대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출자액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하지만 정관에 별도 규정을 두어 출자비율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 비농업인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 조합과 관련한 규정상 무한책임의 성격이 있다. 반면 농협과 협동조합은 출자금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 사업의 범위

농업법인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을 사업범위로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을 사업의 범위로 한다.

영농조합법인은 초기에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공동생산만을 사업으로 하였으나 점차 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초기의 목적은 농업인이 조직을 통해 협업적 공동생산을 하고 이를 농협과 같은

1) 황의식 외(2012) 내용 요약정리

규모가 더 큰 조직과 연결하여 계층적으로 생산자 조직간 협력구조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농산물 유통을 직접 수행하는 등 사업적 측면에서 기존의 농협조직과 경합관계가 발생하였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공동출하의 범위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증가하였으며 경합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농협조직과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의 한 단계로 농업법인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황의식 외, 2012).

그리고 조합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 임에도 조합원의 농산물을 조직화하여 취급하는 것이 아닌 특정농가의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취급하거나 조합원이 아닌 농가의 농산물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조합원의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금지'라는 협동조합적 운영원칙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많은 영농조합법인들을 협동조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표 8> 농업법인의 사업영역 및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농지법 제2조3호)

라. 세제 혜택 및 지원사항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인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혜택은 각종 소득관련 세금의 감면,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면세품의 구매 등으로 다른 법인에 비해 특혜 사항이 많이 존재한다.

○ 소득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은 농업소득 및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 특히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받는 특징이 있다.

<표 9> 농업법인의 세제혜택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감면)	◇ 농업소득(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농업소득 외의 소득), 즉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제 1항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소득 중 각 사업연도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	◇ 농업소득(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 ◇ 대통령령(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감면(최저한세 적용)

○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은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표 10> 농업법인의 세제혜택(계속)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면제 단, 출자한 농업인이 출자지분을 3년내 양도 시 세액을 추징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음.	
배당소득세 면제 (감면)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기타소득 제외) 중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분리과세되며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부과되지 않음.	◇ 좌 동 ◇ 농업소득 외의 소득(기타소득 제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조특법 제 68조 4항 동법 시행령 제65조2항)

○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받는다.

○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면세유류의 구입

기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면세유류구입시 세금혜택을 받는다.

마. 정부의 보조지원

농업인과 동일하게 농업법인에 대하여도 관련 정책사업의 사업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농가가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조직을 사업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모화를 통해 시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대상으로 농업법인 이상의 조직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종합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도록 관련법 규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사업조직이라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 11>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조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p>
--

바. 일반현황

농업법인은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10,867개를 넘어서고 있다. 농업법인 중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수가 농업회사법인의 수보다 많이 설립되었다.

<표 12> 농업법인 수 증가 추이

단위: 개소

구분	2000년	2003년	2007년	2010년	2011년
영농조합법인	3,852	4,274	4,624	8,107	8,724
농업회사법인	1,356	1,158	896	1,633	2,143
합계	5,208	5,432	5,520	9,740	1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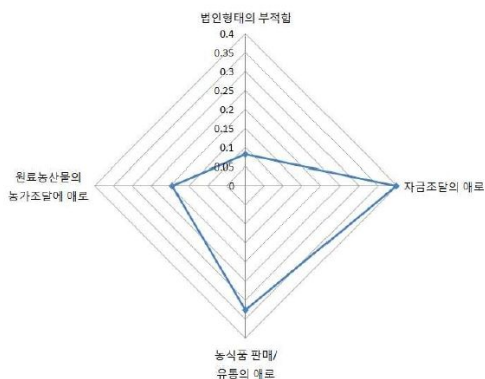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각 년도

<표 13> 농업법인의 사업유형별 비중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기타	
영농조합 법인	2000	2,428 (100)	1,150 (47.4)	314 (12.9)	524 (21.6)	190 (7.8)	250 (10.3)
	2005	2,958 (100)	1,290 (43.6)	433 (14.6)	500 (16.9)	140 (4.8)	595 (20.1)
	2010	7,118 (100)	2,633 (37.0)	1,235 (17.4)	1,365 (19.2)	746 (10.4)	1,139 (16.0)
	2011	7,640 (100)	2,768 (36.2)	1,349 (17.7)	1,774 (23.2)	544 (7.1)	1,205 (15.8)
농업 회사 법인	2000	938 (100)	275 (29.3)	22 (2.3)	14 (1.5)	605 (64.6)	22 (2.3)
	2005	591 (100)	255 (43.1)	65 (11.0)	40 (6.8)	186 (31.5)	45 (7.6)
	2010	1,612 (100)	479 (29.7)	333 (20.7)	265 (22.6)	236 (14.6)	199 (12.4)
	2011	2,052 (100)	632 (30.8)	446 (21.7)	610 (29.7)	92 (4.5)	272 (13.3)
합 계	2000	3,366 (100)	1,425 (42.3)	336 (10.0)	538 (16.0)	795 (23.6)	272 (8.1)
	2005	3,549 (100)	1,545 (43.5)	498 (14.0)	540 (15.2)	326 (9.2)	640 (18.1)
	2010	8,830 (100)	3,112 (35.2)	1,568 (17.8)	1,730 (19.6)	1,082 (12.2)	1,338 (15.2)
	2011	9,692 (100)	3,400 (35.1)	1,795 (18.5)	2,384 (24.6)	636 (6.6)	1,477 (15.2)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각 년도 *출자자 개별운영 법인을 제외한 조사자료



<그림 3> 농업법인의 경영의 애로사항 (황의식, 2012)

영농조합법인등 농업법인은 경영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농식품 판매,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의식, 2012). 또한 농업법인들은 낮은 경영성과로 인해 결산 법인의 1/3이상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참여의지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박문호,2009).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외부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해도 비농업인 및 외부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참여하는 조합원의 출자를 통한 자본조달능력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 농업법인의 협동조합 경영과의 비교

영농조합법인이 경영활동을 통해 조직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농조합법인 가운데 초기의 경영목적인 협동경영체로서 조합원에게 기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참여 조합원의 출자제한이 없어 사실상 1명의 대표가 책임경영

하는 개별경영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조합원의 이윤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중심의 경영으로 개인상인과 별 차별성이 없이 운영되는 영농조합법인도 있다. 다수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을 중심으로 생산을 조직화하기 보다는 유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본래 목적인 소농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업적 농업경영체의 목적달성에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제도상 정책 목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육성의 목적을 단순한 생산성의 향상으로만 상정하고, 경영 실적 중심의 개별적인 사업체의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협동조합적 가치나 철학이 법인의 설립과 운영, 정부의 지원에서 중요한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조합법인 등이 다양한 정부의 보조지원사업의 통로로 활용되면서 많은 법인이 설립되고, 갈등을 빚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생겼다.

협동조합적 경영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의 몰입도 향상, 안정적 계약재배의 확대, 협동조합 문화의 재구성, 지역 농업에 대한 기여 등 협동조합적 가치와 농업정책의 거시적 목표도 달성되지 않았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가치와 비전의 수립과 평가를 소홀히 하여 소규모 가족농의 협업이란 법적 미션을 구체화하지 못했으며, 임직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교양도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또 다른 배경에는 농협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 전략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농협은 초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경합조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동의 생산과 유통, 가공을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하려는 전략과 발상이 부족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따라 초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책적 공정성이 도입되어야 한다. 희망하는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협동

조합원칙의 공유, 원외이용의 제한, 개인 출자한도의 도입, 경영정보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기준을 기존 조직에 적용한다면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영농조합법인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책적 제도 개선시 유의하여야 하며, 향후 협동조합들이 농협과 경합적 관계를 되풀이하지 말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도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

2.2.2. 농업협동조합

가. 근거법령 및 성격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제103조),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제108조), 조합공동사업법인(제112조2), 품목조합연합회(제138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113조)으로 구분되어 있다. 동 법률에서는 법인의 목적,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법인의 기관, 사업범위, 회계, 합병·분할·조직변경·해산 및 청산, 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민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완결된 법인은 아니며, 민법의 일반원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농협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상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설립주체 및 출자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은 그 협동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그 주된 사무소를 농업협동조합의 구역에 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업인 1천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출자금납입총액이 5억원 이상 이면 설립할 수 있으며, 준조합원 제도를 두어 비농업인도 사업 이용이 가능하다. 조합원개인의 출자 한도는 없으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정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자격은 조합,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으로 한다. 회원의 출자 한도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는 100분의 30) 미만이다.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회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 사업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은 교육·지원 사업, 경제사업(판매사업과 구매사업), 신용사업(상호금융), 복지후생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기타 사업 등을 사업범위로 한다.

농협은 1960년대 이후 농촌의 고리대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한 도시민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유리한 신용환경을 만들었다. 당시 연 60%에 달하던 금리를 10%대로 떨어뜨렸으며, 구매사업을 통해 수도권 농약과 비료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쌀 자급을 이루고, 2000년 중반까지 RPC를 운영하며 벼 판매에 어려움을 줄여주었다. 또한 농산물의 공

동판매조직을 육성하고, 중앙회는 양재물류센터 등 소비자유통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할 수 없는 판매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라. 세제 혜택 및 지원사항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 세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 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은 면제된다.(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 법인세 과세특례

농업협동조합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특례 혜택이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표 14> 기본법 상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의 법인세율 비교

적용법인	과세표준	세율
영리 및 비영리법인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농업협동조합	단일적용	9%

○ 인지세의 면제

농업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1항에 따라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내), 예금 및 적금 증서와 통장,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 인지세(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를 면제받는다.

○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5에 따라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마. 농업협동조합의 특성비교

농업협동조합은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협동조합의 사례였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농업협동조합법의 내용과 협동조합의 원칙에서 거의 동일한 운영원칙 및 법적 구성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현재 농업협동조합의 모습은 현재 설립되는 협동조합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협동조합의 설립조건 및 인가규정, 운영상의 규모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신규로 농업협동조합설립의 수요가 없다. 그리고 농업관련 대표적 경영체로서 농산물 유통 및 금융사업분야에서 시장의 점유비율이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농업법인과 달리 직접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농업소득에 대한 면제 등의 혜택은 없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기타 개별법 협동조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3. 조직간 설립요건 및 특징 비교

2.3.1. 설립 및 운영

가. 설립의 요건

앞에서 제시한 조직중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법인형태는 설립의 최소인원이 작고 그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설립이 용이하다. 반면 농업협동조합은 설립에 필요한 인원과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작은 지역단위로는 쉽게 설립하기는 어렵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용이하게 범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경제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자하는 법의 설립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이성 때문에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수요는 다른 법인형태에 비해 높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설립요건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기존의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 차이는 구성원의 농업인 여부이며 영농조합법인도 비농업인이 참여는 가능하지만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표 15> 주요 농촌 경제조직간 설립요건의 비교

협동조합 (기본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설립신고) 5인이상 - 비농업인 참여가능	(설립등기) ○농업인 5인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 여가능 * 결원 시, 1년내 에 충원(미충원시 해 산 사유)	(설립등기) ○비농업인의 출자 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 할 수 없음 * 다만, 총 출자액 이 80억원을 초과하 는 경우 총출자액에 서 8억을 제외한 금 액을 한도로 함	(설립인가) ○지역농협을 설립 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 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위한 최소인 원 : 지역농협은 1000명

나. 사업의 범위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직접적 농영경영이 아닌 조합원의 경제적 이용을 증대시키는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업생산분야에 있어서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이 모두 사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 가공 등의 영역에서는 협동조합은 농협과 유사한 사업도 가능하다. 다만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금지하였으므로 농협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업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가능 분야는 충분히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농업법인과, 농업협동조합의 일부사업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표 16> 주요 농촌경제조직간 가능사업의 비교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
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농업협동조합	<p>1. 교육·지원 사업</p> <p>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아.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p> <p>2. 경제사업</p> <p>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p> <p>3. 신용사업</p>

다. 농지의 소유 규정

현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지법의 농업경영의 조건에 따라 농지의 소유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농업법인 차원에서의 농지를 이용한 공동영농 등의 직접적 사업이 가능하다.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농지법상에서 농업경영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농지의 직접적 소유를 통한 사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법인이 농지소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에서 특수한 목적의 경우 허용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으로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인정받고 포함되어야 가능하다.

<표 17> 주요 농촌경제조직간 농지소유 가능여부

협동조합 (기본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소유불가	○소유 가능	○ 소유 가능 (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 2조 제3호	-

2.3.2. 조직운영 및 경영

가. 구성원의 참여와 책임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1표의 의결권과 유한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한책임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협동조합과의 큰 차이점이다. 농업회사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는 지분에 따라 의사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협동조합과 의사결정 및 경영의 차이를 보인다.

<표 18> 주요 농촌경제조직간 구성원의 참여와 책임

협동조합 (기본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 1인 1표	○ 1인 1표	○ 지분에 따른 표 1표	○ 1인 1표
유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3.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특징

3.1.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설립현황

3.1.1. 국내의 협동조합 설립현황

2013년 3월 31일 기준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은 총 695개 이다. 인가된 협동조합중 일반협동조합은 679개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14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2개로 나타났다.²⁾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수리현황을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신고 기준 전체 795개중 493개로 62.0%를 차지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협동조합의 설립 건수가 높게 나타나 도시지

2) 기재부 협동조합설립현황 자료(3.31) 분석

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수리현황

연번	소관 지자체	신고건수비교 (2.28일 기준)	신고건수누계 (3.31일 기준)	수리건수누계 (3.31일 기준)
1	서울특별시	162	233	185
2	부산광역시	47	57	56
3	대구광역시	16	21	20
4	인천광역시	15	26	16
5	광주광역시	92	109	100
6	대전광역시	20	32	28
7	울산광역시	11	15	14
8	경기도	63	88	65
9	강원도	21	28	22
10	충청북도	8	13	12
11	충청남도	16	26	23
12	전라북도	33	49	43
13	전라남도	27	37	35
14	경상북도	23	28	28
15	경상남도	11	20	20
16	제주특별자치도	4	10	9
17	세종특별자치시	1	3	3
	총 계	570	795	679

3.1.2. 농업농촌관련 협동조합의 설립현황

가. 설립개소수

현재까지 설립신고된 모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립지역 및 주요사업업 기준으로 농촌지역에 설립된 협동조합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수율을 예상하여 보았다. 일반협동조합으로 신고된 전체 795건 가운데 농업 및 농촌관련산업 협동조합이 156개(19.6%)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에서 농업농촌관련 협동조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농촌지역에서도 협동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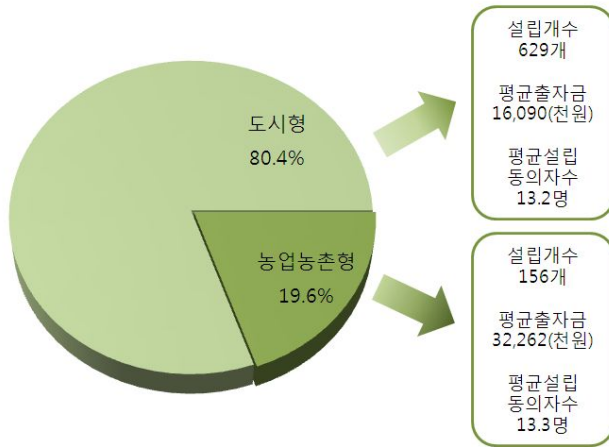
합이 지속적으로 설립될 수 있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0> 지역별 농업 및 농촌관련산업 협동조합 설립현황

지역	농업 및 농촌관련산업 협동조합	총합계	비율
서울특별시	9	233	3.9%
광주광역시	20	109	18.3%
경기도	22	88	25.0%
부산광역시	2	57	3.5%
전라북도	25	49	51.0%
전라남도	24	37	64.9%
대전광역시	3	32	9.4%
강원도	12	28	42.9%
경상북도	10	28	35.7%
인천광역시	2	26	7.7%
충청남도	12	26	46.2%
대구광역시		21	0.0%
경상남도	2	20	10.0%
울산광역시	2	15	13.3%
충청북도	6	13	46.2%
제주도	5	10	50.0%
세종시		3	0.0%
총합계	156	795	19.6%

나. 경영규모 및 특성

평균출자금은 농업 및 농촌관련산업형으로 분류한 협동조합의 평균은 32,262천원으로 도시기반산업 및 기타산업형 협동조합의 16,090천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축산 등의 생산자협동조합이 출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평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협동조합의 설립시 평균설립동의자수는 13명으로 농업 및 농촌관련산업형과 도시기반산업 및 기타산업형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4> 농촌관련 협동조합의 설립현황과 특징

평균출자금규모가 높은 순부터 농업농촌 관련 협동조합의 현황을 보면 5억원 이상의 협동조합이 3개로 많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1천만원 정도에서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많았다.

기존의 농업법인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법인당 평균 출자금이 280백만원이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법인의 출자자수 및 출자금 현황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 신설되는 협동조합들의 규모는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농촌관련 협동조합의 평균출자금 및 설립동의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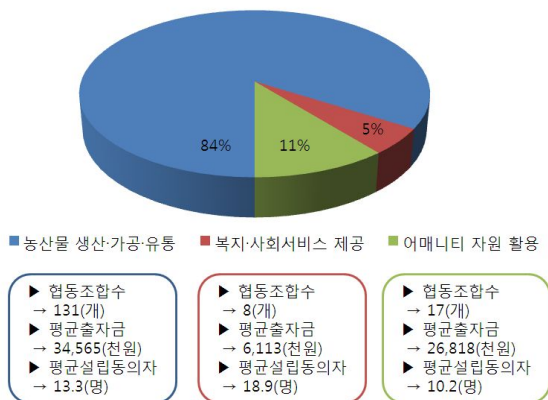
	협동조합개수	평균출자금(천원)	평균설립동의자수
농업농촌형	156	32,262	13.3
도시	639	16,090	13.2
총합계	795	19,264	13.2

<표 22> 출자금규모별 농업 및 농촌관련산업형 협동조합 수

초기출자금규모구분	농업농촌형 협동조합수	사업의 내용
5억 이상	3	축산조사료생산/농산물공동/정육판매유통
1억 이상	11	농산물판매, 가공, 한우유통
5천만원 이상	8	농산물 판매, 유통,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1천만원 이상	49	농산물 판매, 가공, 유통, 조경, 수목
1백만원 이상	83	농산물공동판매, 가공, 유통, 꾸러미사업
1백만원 미만	7	농촌유학 홍보, 현미 판매
총계	161	

다. 농업농촌관련 협동조합의 사업유형

농업 및 농촌관련산업형 협동조합을 다시 사업에 따라 ‘농산물 생산, 가공,유통’, ‘어메니티 자원활용’, ‘복지·사회서비스제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현재 설립되고 있는 농업 및 농촌관련산업형 협동조합에서는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관련된 협동조합이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5> 농업농촌 협동조합의 사업유형별 현황

<표 23> 사업의 유형별 농업농촌 협동조합의 현황

사업구분	협동조합개수 (개)	평균출자금 (천원)	평균설립동일자 (명)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131	34,565	13.3
복지·사회서비스 제공	8	6,113	18.9
어메니티 자원 활용	17	26,818	10.2
총합계	156	32,262	13.3

농산물 생산·가공·유통과 관련된 협동조합은 아래 <표24>와 같은 주요 사업을 신고하였다. 주로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신고한 협동조합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현재까지의 신고현황으로 볼 때 기존의 농산물생산·가공·유통영역에서는 기존의 농업법인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

<표 24>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형 협동조합의 주요사업

사 업	사업신고내역	비고
농산물생산관련	(친환경)농산물생산 사료,조사료제조판매 식물농장 / 영농사업 추곡수매 및 미곡도정	품목별 생산관련 사업
농산물유통관련	농산물(공동)판매,유통 농수산물도소매 친환경꾸러미사업 로컬푸드 생산자직거래장터 공동선별, 공동판매 정육,판매유통	품목별 유통관련 사업
농산물가공관련	농산물가공 농산물식품가공,제조 차제조판매 임산물가공 김치가공판매	
자재구매	자재공동구매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농산물 수확체험, 전통문화체험, 생태관광 등의 농촌체험을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농촌지역의 복지·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거나 다문화가족이 소규모 경제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사례들이 나타났다.

<표 25> 농촌어메니티 활용분야 협동조합 현황

지역	협동조합명	주요사업
경기도	송송골드림보협동조합	딸기,된장체험
전라남도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	농산물직거래판매농촌문화체험
경기도	양평농촌나드리협동조합	농촌체험
전라남도	해남김치마을협동조합	농촌체험, 농특산물가공, 판매
경기도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하루야”	생태관광지원
전라북도	전주합굿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	전통문화의 체험,공연사업
광주광역시	심비오협동조합	지역관광 활성화
전라남도	농산어촌섬마을유학협동조합	폐교활용 교육
강원도	춘천별빛산골유학협동조합	농촌유학 홍보

현재까지 설립된 협동조합들을 신고내역의 사업명으로 추정해본결과 크게 농산물생산유통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농촌 지역의 관광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들도 많지는 않지만 설립의 수요가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각 개별 협동조합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내용 및 현황을 파악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농촌사회서비스분야 협동조합 현황

지역	협동조합명	주요사업
교과부	양구도농문화사회적협동조합	교육·사회복지서비스업
전라북도	다문화협동조합	통신기기 도소매,친환경농산물유통
전라북도	노송밥나무협동조합	음식점운영, 마을공동텃밭 경작 등
전라북도	원주두꺼비하우징협동조합	농가주택개량, 황토벽돌사업
광주광역시	한국농어촌다문화협동조합	다문화가족정착지원
광주광역시	한국농촌다문화 협동조합	다문화문화예술사업
전라북도	행복전북사업협동조합	도시락 배달,특산물 판매

3.1.3. 신규 설립된 협동조합 인터뷰

가. 인터뷰 대상

현재 농업분야 및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한 156개의 협동조합 중 연락이 가능한 14개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응답한 협동조합들 중 다수는 농산물생산 유통과 관련된 협동조합이었으며, 농촌지역의 문화 및 교육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도 포함되었다.

<표 27> 농업분야 및 농촌지역 협동조합 전화인터뷰 대상

연번	협동조합명	사업분류
1	갈마드는마실 협동조합	영농자재 공동구입 농·임산물 생산판매
2	춘천별빛산골유학협동조합	농촌유학 홍보
3	양평농촌나드리협동조합	농촌체험
4	K아로니아협동조합	아로니아생산
5	공수리부활공동체협동조합	가금사육, 계란생산
6	군산팜협동조합	군산팜소핑몰운영, 농수특산물판매장운영
7	떡메마을협동조합	떡, 쌀 가공 판매, 지역농산물 구매
8	브레인무주협동조합	친환경 두뇌음식학교운영, 두뇌음식꾸러미 배송
9	여수강소농생산자협동조합	농산물공동판매
10	열린생활협동조합	물품 공동구매 및 공급 농수산물 직거래
11	전주함굿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	전통문화의 체험, 공연사업
12	정읍푸드융감한여성농업인협동조합	농산물 판매 및 가공
13	초록나래로컬푸드협동조합	꾸러미사업, 농산물 판매사업
14	행복마을전남협동조합	김치 판매

나. 인터뷰 항목 및 내용

인터뷰의 내용은 현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다른 법인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및 기대효과, 협동조합에 필요한 지원이나 혜택, 농협과의 관계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 현재 협동조합 설립을 하신 후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 기존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동등한 법적제도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농법인의 경우 세제혜택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각종 정부의 정책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법이나 제도적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 현재협동조합 설립 준비과정에서 어려우신 점은 무엇입니까?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내에서 농협과 사업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합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이점이나 기대하시는 효과가 있습니까?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인터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응답에 내용을 문항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 ① 현재 협동조합설립을 하신 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요구
 -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운영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지방의 공무원들이나 지역민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많음
 - 신생협동조합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설립된 협동조합 홍보를 위해 시, 군이나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법제도개선에 대한 요구

- 세무관계가 복잡하여 이에 대한 간편화와 법제도상의 개선이 필요
-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 부과세를 면제해주었으면 좋겠다. 법인인 만큼 법인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한다. 부과세는 물품을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친다. 혜택이 절실하다
- 자금지원에 대한 요구
 - 아직 문제되거나 하는 것은 없음. 향후 자본금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금들이 필요한 상태임
 - 가능하다면 자금 대출이나 자금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꾸러미 사업을 함에 있어 택배비나 포장재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포장재의 경우 김제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택배비의 경우 한건당 3,200원 정도가 드는데 부담이 있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 시설지원에 대한 요구
 - 냉장저온 창고 등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 시설물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수준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비슷한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 시설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쪽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보증금으로 쓸 수 있게 대출지원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 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
 - 경제적 지원이나 시설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연농법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생각인데 자연농법에 대한 교육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 사업에 있어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프로그램(전문적인 농수축산물 관리)도 교육시켜주었으면 좋겠고, 조합원교육이나 회원관리 프로그램도 교육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유통과 같은 농업협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인 선진지에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무나 회계에 대한 국가지원 교육프로그램이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설립 이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는 미비하다
-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 영농조합법인이나 다른 생산자 협동조합들과 연결이 잘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② 기존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동등한 법제도적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농법인의 경우 세제혜택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각종 정부의 정책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
- 협동조합이 기존 농업법인과 같이 법적제도 혜택이 없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같은 농산물 사업을 하는 만큼 세제부분에 동일한 혜택이 있기를 바란다. 현재 사업을 하면서 부과세로 매년 4천만원 가까이를 내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협동조합에도 농업법인과 같이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협동조합이 농업생산자라면 구성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시소비자들을 조합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농산물 판매를 증진시키고, 농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구성이 농업인이라면 이루어져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 협동조합도 기존 농업법인과 같이 법적제도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농업관련 업무를 하는 협동조합법인에도 같은 혜택이 있었으면 한다
- 법제도적 혜택 차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못 느낌
- 현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상태이며 별다른 문제는 못 느낌
- 차별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
- 영농조합법인은 가족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에 대한 무조건 지원보다 협동조합이든 영농조합이든 내용면에서 구성원의 규모 등을 보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개인사업자들과 공동사업자의 경우 차별이 필요함
- 기타
- 사업을 하면 정당한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좋으나 사업을 하면 세금감면 보다는 이후의 지역관계자 및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같은 지원이 되어야 함. 현재 영농법인 등도 근래에 들어와 세금과세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임

③ 현재 법이나 제도적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 법과 제도 상의 어려움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부과세를 면제해 주는데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부과세를 면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과세가 면제된다면 구대단가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공시를 해야 한다면, 조합원외의 사업이용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농협의 경우에도 준조합원 제도가 있어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의 경우엔 불가능하다

-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애매한 부분 외에는 아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
- 보증금 대출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 행정상의 어려움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려고 하나 교육부, 농식품부 모두 적극적이지 않고 미루는 방식으로 진행함. 설립인가로 인해 조건이 까다로워 당장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설립함

- 협동조합이라고 다른 법인과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협동조합 법인에 참여하는 사람도 똑같은 시민이기에 동등한 자격으로 대해주었으면 좋겠다

- 우리가 설립한 협동조합은 농민들이 만들어낸 순수한 모임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 사업운영상 어려움

- 이사회나 총회를 통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외에는 아직 특별한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 기타

-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어서 아직까지 문제되는 사항이 있지는 않다

- 정부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홍보나 교육을 할 때 사람들에게 과도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④ 현재협동조합 설립 준비과정에서 어려우신 점은 무엇입니까?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협동조합 신고시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어려움

- 설립전에 농촌지도사로부터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교육을 받았었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농민일보를 통해서도 알고 있었다. 여수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공무원들도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점이 어려운 점이였다
- 설립 과정에서 협동조합 신고를 받는 관계 공무원이 수동적인 것이 어려움이었고,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제 비슷한 형태로 신고를 받고 있었던 것이 어려운 지점이였다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신고제인데 시도지사에서는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 자체에 대해 너무 디테일하게 묻는 것부터, 표준정관례를 협동조합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을 하면 설립신고를 받는 공무원들은 불안해했다. 공무원들이 협동조합설립에 대해 설립하려는 사람들보다 많이 모르는 것 같다

○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 세무상 복잡하여 운영시 어려움이 예상됨
- 설립할 때 직접 공부하여 준비했기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 문제는 설립보다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은 좋은 제품을 생산할 생산자를 찾는 부분이다

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협동조합의 사업적 적합성 때문에

-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시드머니를 지원재단을 통해서 마련했고, 향후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인만 참여를 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비농업인도 자유롭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등 인적자원측면의 강점이 있었다
- 농업인들만으로 법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선택했다.

농촌에서 도시소비자들을 연결시키는 측면에서도 협동조합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는 협동조합에 대해 언론에서 잘 다룬 것도 있었고, 농업생산자의 경우 소비자와 괴리가 큰데 협동조합은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고리가 되어준다. 그리고 그러한 생산자-소비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질 좋은 유기농 친환경 먹거리를 더 용이하게 공급할 수도 있다
- 장기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가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선택함
- 기존에 사단법인으로 하여 양평군의 농촌체험마을들의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법 법제도의 도입으로 시행을 한 것임. 근래 체험마을들의 세무조사 문제로 인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웠음.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정식적으로 다양한 영리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함

○ 설립의 용이성 때문에

- 기존에 비법인형태로 운영을 하였으며 법인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을 선택함. 협동조합의 설립용이성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설립

○ 정부의 홍보 및 지원때문에

- 요즘 협동조합에 대해 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런 흐름에 부응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에 협동조합이 지원대상이기도 하고,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원한다고 하여 협동조합을 선택하였다
- 전북도나 방송에서 협동조합 소개를 많이 했고,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협동조합을 선택했다
- 소상공인협업화 사업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앞으로 할 사업에 협동조합이 적합할 것 같아 협동조합을 선택했다

○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해서

-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하고, 협동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선택했다. 앞으로의 정부정책도 교육과 컨설팅위주로 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바라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사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고자 협동조합을 선택하였다
-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람간의 교류와 사업을 하기 위함이며 소비자들의 다종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으로 설립함
- 농업법인에 비해 협동조합이 세제혜택이 없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1인1표라던가 지분에 상관없이 사람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협동조합을 선택했다. 영농조합법인도 1인1표이기는 하지만 지분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⑥ 지역 내에서 농협과 사업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합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 농협과 경쟁관계 형성우려
 - 농협과 같은 농산물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경합되면 되었지 협력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농협도 원가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협동조합과 협력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농협뿐만이 아닌 일반마트도 있다
 - 전시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농협에서도 전시판매를 한다고 해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농협보다 우리 사업의 규모가 작아서 전시 판매를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대신 농협 전시판매장에서 우리 물품을 전시해주는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농협과 협력을 기대
 - 기존의 도시에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 졌는데 이에 대한 연대를 진행중인 지역의 농협과는 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계획단계에 있음. 지역마다 농협과의 연대는 그 지역의 관계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농협-행정-신규협동조합 간의 평소에 관계나 협력체계가 잘되는 지역은 협력이 잘됨)
 - 농협과 경합되는 부분은 없음 농협마트에 직매장을 내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함
 - 앞으로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과 관계를 맺어 생산자조직을 우리 협동조합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해갈 것이다. 정부에서도 농협과 신생협동조합들이 같이 사업을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장려했으면 좋겠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우리 떡메마을의 물품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곳이 있어서 경합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다
- 농협과 판매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
- 농협 직관장을 이용하는 등 농협과 협력하고 싶다
- 기타
 -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소규모라서 대규모사업을 벌이고 있는 농협과 현재로서 경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 농협의 사업규모나 크기를 볼 때 작은 신생 협동조합이 농협과 경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농협이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생산품을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력해줬으면 한다
 - 농협은 주로 대규모 점포이지만, 우리는 골목장터에서 소규모 판매를 위주로 하는 마트형 사업체이다. 농협과 사업면에서 경합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⑦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이점이나 기대하시는 효과가 있습니까?

- 공동체 형성을 기대
 - 조합원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함. 함께 살자는 뜻에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함. 1년간은 사업보다는 교육과 공동체 구축에 핵심 두고 운영
 - 협동조합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개인적으로 공연을 했을때보다 수입이 나아지거나 재정적으로 크게 변한 것은 없으나, 예술인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고, 예전의 수동적인 모습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같이 잘 해보자 하는 마인드로 변한 것이 이점임
-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
 - 사업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설립이 용이한 법인의 형태임
 - 기존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대체하고 마을들의 공동사업을 하기에 협동조합 법 인격이 적합
 -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질것이라고 생각 함

- 무엇보다도 개인 사업으로 하던 때 보다는 법인화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생산, 공동구매를 할 수 있고, 조합원들간의 협력이 용이. 개인 사업이 아니므로 조합원들이 모이는 일이 많고 이 속에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어 새로운 생산지를 찾을 때도 큰 도움

○ 지역사회 기여

- 앞으로 협동조합으로 마을기업형태로 성장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갈 것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환원사업도 할 것이며,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운영을 하길 바라고 있다

-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살만한 여건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지역이 살려면 우선 돈이 돌아야 한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고, 도시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농촌과의 사이에서 중간허브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우리는 좋은 상품을 판매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마을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환원하여 기여를 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윤을 크게 내려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다

○ 기타

-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를 통해 판로개척을 늘려가고 있고, 우리 농수축산물의 품질이 인정됨에 따라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

-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상품구매욕구도 커지리라 생각한다

- 특별한 이점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 협업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자금적인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다. 인터뷰 결론 및 시사점

현재 협동조합을 설문한 결과 설립이유로 첫째,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 사업을 수행하다가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 둘째, 농업인 외의 소비자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회원을 구성하려는 경우, 셋째,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원리와 가치에 부합하고자 설립한 경우로 응답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및 산하기관의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에 따른 설립신청 및 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도 일부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에 대해 수익적으로 이점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신 협동조합으로 공동의 사업을 하면서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경제적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또한 협동조합으로 법인화를 하면서 이용하는 소비자나 관계자의 입장에서 신뢰감을 주거나 호응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시설 및 대출과 같은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반대로 교육과 홍보와 같은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기존의 농업법인과 동등한 법적제도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법상 협동조합에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졌으면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높았지만 일부 응답자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또는 동등한 과세조건에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응답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협동조합의 자립적 운영에 대한 협동조합마다의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농업인외의 일반인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 농업법인과 동등한 지원을 논의할 시에 구성원과 사업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협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협력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농협의 매장에 대한 입점 및 판로확보에 대한 요구가 주로 나타났다. 현재 협동조합의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과 현재 경합이 일어나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이 규모화 되었을 때 사업적으로 경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응답자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어 협동조합이 설립된지가 오래 지나지 않아 법제도적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지 않았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협동조합이 많기 때문이다. 향후 협동조합의 경영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응답자 중에서 협동조합의 세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계법들에 대한 안내와 개선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2.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설립의향

3.2.1.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에 관한 연구³⁾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인지도는 92.1%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39.2%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협동조합을 '마음이 맞는

3) 보건사회연구원은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예산되는 수혜자(조직 및 개인)를 대상으로 총 2,502개의 표본을 면접과 온라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사람들이 만드는 영리·비영리 조직(52.6%)’이나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48.7%)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어 정확히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은 농어촌 공동체회사와 마을기업 등의 농촌지역의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의 주요 내용 중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이 36.5%로 낮게 나타났다. ‘12년도에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13년도에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언론보도 및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당시의 응답보다는 인지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연구에서 협동조합의 기대효과로 ‘주민 참여 활성화(29.1%)’, ‘지역경제 활성화(24.9%)’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2012)의 연구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고용안정성 강화(18.8%), 일자리 생성(18.5%), 비영리 기관들의 자립(21.4%), 지역경제 활성화(18.4%)를 응답하였다. 사회적 효과로는 시민참여 의식증대(33.7%), 복지사업활성화(24.4%) 등을 응답하였다.

3.2.2. 협동조합의 설립 및 전환의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존 사업체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은 단체의 경우 37.8%로 나타났으며, 신규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19.9%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의향과 관련하여서는 설문대상 경영체중 53.8%가 설립 또는 전환 의향을 나타내었다. 인지여부에 비하여 전환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법인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중 협동조합 전환의 수요가 높았는데 45.5%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첫째, 사회서비스, 교육훈련, 급식 도시락, 여가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경우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익법인들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농촌지역의 임의조직 등에서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수요가 있었다.

<표 28> 농어촌 사업체의 협동조합 전환(또는 신규) 의향 조사결과
 단위: %

구 분		협동조합전환	신사업 추진
사업내용	농업생산	45.5	15.3
	농산물가공	49.6	12.7
	농산품유통	47.9	15.1
	농촌관광	49.5	17.5
	사회서비스	71.4	16.7
	급식/도시락	54.5	40.0
	기타 서비스	55.0	11.1
	일반제조업/유통	29.6	26.3
	교육/훈련/연구	71.8	9.1
	여가 서비스	54.3	31.3
	기타	34.3	17.4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48.9	15.0
	주식회사	35.1	24.3
	유한/합명/합자	14.3	50.0
	비영리사단법인	43.6	17.0
	공익법인	60.0	33.3
	임의조직	43.8	11.5
협동조합법 인지	비인지	39.2	12.8
	인지	56.5	21.3
전체		45.5	15.3

(농촌경제연구원, 2013 자료 재구성)

3.2.3.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의 연구에 의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부가적 정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과 동일 지원(28.5%)', '정부조달사업 우선권 부여(18.0%)', '협동조합 부실시 시민기금으로 자금지원(12.5%)'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또한 협동조합의 미설립에 대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지식부족(35.7%)', '사업체내 의견교환 부족(18,9%)',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부족(13.3%)'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4. 농촌지역 협동조합에 설립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4.1. 설문 의 개요

가.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정책수요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업·농촌 관련 주요 연구자 및 현장활동가, 농업인, 관련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자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이중 304명이 메일을 열람하여 236명이 응답하였다(응답율 77.63%).

나. 응답자 특성

응답자는 '농업농촌관련 연구자'가 전체의 29.7%, '관련단체 활동가'가 전체의 18.6%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의 경우 전체의 13.1%를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64.41%는 시군단위 읍면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특·광역시 동지역의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50개가 가장 많았으며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에서 향후 협동조합에 가입할 의향이 있거나 현재 가입된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농산물 공동생산, 가공,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비중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9> 응답자의 기본정보 : 직업

	응답수	비율
1) 농업농촌관련 연구자	70	29.7%
2) 농업인	31	13.1%
3) 농업관련 법인 종사자	20	8.5%
4) 농협 종사자	27	11.4%
5) 행정공무원	18	7.6%
6) 관련단체 활동가	44	18.6%
7) 기타	26	11.0%
합계	236	100.0%

<표 30> 응답자의 기본정보 : 거주지

	응답수	비율
1) 시군단위 읍면동지역 거주	152	64.41%
2) 특광역시 동지역 거주	80	33.90%
3) 기타	4	1.69%
합계	236	100.0%

<표 31> 응답자의 기본정보 : 연령

	응답수	비율
1) 30세 미만	6	2.54%
2) 30세이상 40세미만	37	15.68%
3) 40세이상 50세미만	68	28.81%
4) 50세이상 60세미만	100	42.37%
5) 60세이상	25	10.59%
합계	236	100.0%

<표 32> 응답자의 협동조합 설립의향

	응답수	비율
1) 농산물 공동생산, 가공,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76	30.5%
2)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사업 협동조합	37	14.9%
3) 마을개발 및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30	12.0%
4) 농촌지역 서비스 공동이용 협동조합(가사, 보육, 문화, 취미활동)	39	15.7%
5) 물품의 공동구매를 위한 소비협동조합	23	9.2%
6)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지원, 지역자원 보호 등)	39	15.7%
7) 기타	5	2.0%
합계	249	100%

4.2. 설문내용 및 결과

4.2.1.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의 인지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6.6%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농협종사자' 집단에서 가장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공무원'의 이해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리커트 5점 척도에 의한 평균비교). 그 밖에 연령, 거주 지역, 학력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33> 협동조합기본법의 인지여부

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응답수	비율
1) 전혀그렇지않다	3	1.3%
2) 그렇지않다	23	9.7%
3) 보통이다	100	42.4%
4) 그렇다	81	34.3%
5) 매우그렇다	29	12.3%
총합계	236	100%

<표 34> 협동조합기본법의 인지여부 (직업별)

직업	평균	N	표준편차
농업농촌관련연구자	3.4286	70	.86093
농업인	3.3548	31	.79785
농업관련법인종사자	3.7000	20	.73270
농협종사자	4.0000	27	.73380
행정공무원	2.9444	18	.87260
관련단체활동가	3.4773	44	.95208
기타	3.3077	26	.88405
합계	3.4661	236	.87696

나. 협동조합의 농촌지역사회 기여기대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이 농촌지역에서 설립되는 것이 농촌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7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평균이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연구자’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이 많이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농협종사자’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이 더 적게 나타났다.

<표 35> 협동조합의 농촌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동의 정도

	응답수	비율
1) 전혀그렇지않다	2	0.8%
2) 그렇지않다	18	7.6%
3) 보통이다	41	17.4%
4) 그렇다	122	51.7%
5) 매우그렇다	53	22.5%
합계	236	100.0%

<표 36> 협동조합의 농촌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동의 정도(직업별)

직업	평균	N	표준편차
농업농촌관련연구자	4.1143	70	.69246
농업인	3.6774	31	.97936
농업관련법인종사자	3.8500	20	.81273
농협종사자	3.2963	27	.86890
행정공무원	3.6111	18	1.03690
관련단체활동가	4.0682	44	.89955
기타	3.9231	26	.79614
합계	3.8729	236	.87564

‘어느 측면에서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자원의 결합을 통한 농산업의 복합화’, ‘주민의 경제적 참여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산품의 판로확대’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협동조합의 농촌지역사회의 기여점

기여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점수	비율
1) 일자리 창출	21	21	25	130	9.2%
2) 지역경제 활성화	39	35	38	225	15.9%
3) 각종 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	11	14	15	76	5.4%
4) 지역 특산품 등의 판로확대	40	38	22	218	15.4%
5) 다양한 자원의 결합을 통한 농산업의 복합화(6차산업화)	39	51	36	255	18.0%
6) 귀농귀촌의 등의 외부인구의 유입 확대	16	10	19	87	6.1%
7) 주민의 경제적 참여 활성화	43	43	33	248	17.5%
8) 농촌 복지 및 사회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23	24	45	162	11.4%
9) 기타	4	0	3	15	1.1%
합계	236	236	236	1416	100%

다. 농촌지역 내 협동조합 활성화의 장애요인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으로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역량부족’,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부족’,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지도자 및 활동가 부족’등의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과 주도하는 리더 및 활동가 모두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 중에서 ‘기존 지역농협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에 따른 신규진입 장벽’도 응답이 적지 않았다. 반면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부족’을 응답한 사람도 있었으나 다른 어려움에 비해 응답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38>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데 겪는 어려움

	1순위	2순위	3순위	점수	비율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부족	70	21	43	295	20.9%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부족	22	18	19	121	8.6%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실질 수요가 없음	13	17	24	97	6.9%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책 및 제도	8	6	9	45	3.2%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역량부족	49	64	33	308	21.8%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지도자 및 활동가 부족	44	47	30	256	18.2%
협동조합 설립절차 관련 정보의 부족	9	16	21	80	5.7%
지원기관의 부재로 서비스 제공의 애로	3	9	22	49	3.5%
기존 지역농협의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에 따른 신규진입의 장벽	16	35	27	145	10.3%
기타	1	2	7	14	1.0%
합계	235	235	235	1410	100%

4.2.2.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

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방향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의견을 받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협동조합과 관련된 컨설팅 및 자문제공’이었다. 그 다음으로 ‘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훈련 사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비의 직접 지원이나 정책사업시 우대,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높지 않았다.

<표 39>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의 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점수	비율
1)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활동	31	10	39	152	10.7%
2) 협동조합의 인건비, 운영비등 경상비 직접지원	37	10	20	151	10.7%
3) 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훈련 사업	46	51	34	274	19.4%
4) 협동조합과 관련된 컨설팅 및 자문제공	56	62	29	321	22.7%
5)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신청시 우대(가정부여 등)	11	32	26	123	8.7%
6)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공공 거래시 간접지원	25	28	27	158	11.2%
7) 일반법인 대비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 제도개선	22	26	34	152	10.7%
8) 각종 규제사항에서 예외인정 제도개선	4	16	22	66	4.7%
9) 기타	4	1	5	19	1.3%
합계	236	236	236	1416	100%

나. 농업법인과 동일한 혜택부여에 대한 인식

현재 농업법인이 받고 있는 세제혜택, 정책상 주요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 농지소유 등과 같이 농업분야의 유사한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일부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34.3%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농협중사자' 집단에서 '필요없다'라는 의견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0> 농업법인과 동일한 혜택부여에 대한 동의정도

	응답수	비율
1) 동일한 수준으로 필요하다	137	58.1%
2) 동일한 수준은 아니나 일부 필요하다	81	34.3%
3) 필요없다	14	5.9%
4) 잘모르겠다	4	1.7%
합계	236	100%

<표 41> 농업법인과 동일한 혜택부여에 대한 동의정도(직업별)

	동일한수준으로 필요하다	동일한수준은아 니나일부필요하 다	필요없다	잘모르겠다
농업농촌관 련연구자	39 55.7%	28 40.0%	3 4.3%	0 .0%
농업인	19 61.3%	10 32.3%	2 6.5%	0 .0%
농업관련법 인종사자	10 50.0%	10 50.0%	0 .0%	0 .0%
농협중사자	14 51.9%	8 29.6%	5 18.5%	0 .0%
행정공무원	9 50.0%	7 38.9%	2 11.1%	0 .0%
관련단체활 동가	30 68.2%	11 25.0%	2 4.5%	1 2.3%
기타	16 61.5%	7 26.9%	0 .0%	3 11.5%

다.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에 대한 인식

동일한 수준의 법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별로 의견으로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65.7%로 나타났다.

<표 42>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추가하는 방안의 동의정도

	응답수	비율
1) 매우그렇지않다	19	8.1%
2) 그렇지않다	21	8.9%
3) 보통이다	39	16.5%
4) 그렇다	97	41.1%
5) 매우그렇다	60	25.4%
합계	236	100%

‘각각의 정책사업별로 사업대상자로 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지침 및 규정을 개정하여 동등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3.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43> 정책사업 사업대상자로 동등한 여건조성 방안의 동의정도

각각의 정책사업별로 사업대상자로 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지침 및 규정을 개정하여 동등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응답수	비율
1) 매우그렇지않다	9	3.8%
2) 그렇지않다	21	8.9%
3) 보통이다	33	14.0%
4) 그렇다	112	47.5%
5) 매우그렇다	61	25.8%
합계	236	100%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규정 및 고시사항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44> 생산자단체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의 동의정도

	응답수	비율
1) 매우그렇지않다	13	5.5%
2) 그렇지않다	14	5.9%
3) 보통이다	31	13.1%
4) 그렇다	118	50.0%
5) 매우그렇다	60	25.4%
합계	236	100%

정책적 지원사항에 대한 기타 주관식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설문에서 제시되었다.

<표 45> 정책적 지원사항에 대한 주관식 의견

○ 협동조합의 특성 강화

- 자발적인 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 교육, 컨설팅 등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회수 조치의 경우에는 완벽한 회수가 중요함
- 법인 및 농가단위 단체 육성에 도움만을 주는 방법이라면 기존의 조직과 별반 차이가 없게됨, 협동조합의 의의, 취지에 대한 공동 목표 수립 필요
- 과거와 같은 퍼주기식 지원은 결국 무늬만 바꿀 뿐이다. 진정으로 농업인들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길은 농업인들에게 협동조합이란게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명확히 주시시키는 것이다
- 각종 단체 협회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농민, 지역민들의 현실을 보면 협동조합원 역시 그러리라 생각된다. 유명회원 무임승차방지를 위해 일정수준의 참여율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
- 협동조합은 타의가 아니라 자발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만 지원하되, 각각의 다양한 수준과 단계에 맞는 지도와 지원(맞춤형)

이 필요함(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반드시 정착에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고, 이에 자극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것임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공동의식이 필요한 것을 홍보하여, 협동조합원의 교육하는 것을 기본교육을 일정기간 의무해야 하는 법제도가 필요함

-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어디까지나 자율성이 중요하므로 정부의 간섭이나 지원, 제도적 통제 등으로 부터 자유롭도록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이나 간섭을 받는 협동조합은 대부분 실패한다. 한국의 농협중앙회가 가장 확실한 사례로 협동조합 정신이 완전히 결여된 실패의 사례다

○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

-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각 지역마다 있으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접근하고 문의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분야별 운영 활성화

- 각 분야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머리싸움에 기관을 이용하는 암체 같은 사람은 철저히 감사하여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농촌의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농어업인의 자율적 기초조직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사업범위도 돌봄, 복지,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농축협등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역의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 농촌, 농업 활성화 위한 정책마련

- 농촌, 농업의 생태적 재건을 위한 지역(농)민의 자발적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재원을 마련, 공급하는 특별전담 부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정부에서 생산자단체협동조합에 대해서 저운 창고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가세 면세, 유통세 면세확대, 전기료 인하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조합의 단체에서는 확대 지원해줘야 한다

○ 기타

- 협동조합형태로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만들어지면 곤란할 것으로 본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규모화가 되어야 물량 품질이 좋아질수 있다. 우리농촌의 현실은 인근지역에서 잘된다고 하니 따라서 하는경향이 많음. 그러면 100%실패합니다 따라서 품목별 지역별 특성화가 된 품목을 제외한 것은 기존 조합에서 공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시장에서 농협의 독점특혜 해소
- 기존에 유통기간하고 차별성과 진입장벽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불필요한 협동조합이 많이 결성되어 많은 국민적 비용발생이 우려됨
- 특별관로대책이 필요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일정 부분 차별적으로 이해할 필요

4.2.3. 협동조합과 기존 조직과의 관계 인식

가. 농협과 신규 협동조합과의 관계전망

설립되는 협동조합들과 기존의 농협과의 관계에 대하여 대부분이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농협중사자 집단의 경우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행정공무원의 경우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당위적 전망을 묻는 질문 외에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기존의 지역농협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는 협력적 관계보다 경쟁관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표 46>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의 관계 전망

	응답수	비율
1)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197	83.5%
2) 상호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34	14.4%
3) 잘 모르겠다	5	2.1%
합계	236	100%

<표 47>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의 추구관계(직업별)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상호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야한다	잘모르겠다	전체
농업농촌관련 연구자	빈도	62	6	2	70
	%	88.6%	8.6%	2.9%	100.0%
농업인	빈도	26	4	1	31
	%	83.9%	12.9%	3.2%	100.0%
농업관련법인 종사자	빈도	15	5	0	20
	%	75.0%	25.0%	.0%	100.0%
농협종사자	빈도	26	1	0	27
	%	96.3%	3.7%	.0%	100.0%
행정공무원	빈도	12	6	0	18
	%	66.7%	33.3%	.0%	100.0%
관련단체 활동가	빈도	39	4	1	44
	%	88.6%	9.1%	2.3%	100.0%
기타	빈도	17	8	1	26
	%	65.4%	30.8%	3.8%	100.0%

<표 48>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의 실제 관계 전망

	응답수	비율
1) 실제 현실조건상 경쟁관계가 조성 될 것이다	153	64.8%
2) 실제 현실조건상 협력적 관계가 구축 될 것이다	57	24.2%
3) 상관이 없을 것이다	26	11.0%
합계	236	100%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농협과 협동조합이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하나 실제 현실조건상 경쟁관계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54.2%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49>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의 관계 교차분석

		기본법상협동조합이설립될경우기존의지역농협과의관계가실제로어떻게될것으로생각하십니까?			전체
		실제현실조건상경쟁관계가조성될것이다	실제현실조건상협력적관계가구축될것이다	상관이없을것이다	
향후기본법으로설립되는협동조합과지역농협과의관계는어떻게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128	51	18	197
		54.2%	21.6%	7.6%	
	상호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22	6	6	34
		9.3%	2.5%	2.5%	14.4%
잘모르겠다	3	0	2	5	
	1.3%	.0%	.8%	2.1%	
전체		153	57	26	236
		64.8%	24.2%	11.0%	100.0%

즉, 협동조합간의 협력적 관계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나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이는 현재의 조건에서 농협과 협동조합의 경합 및 갈등이 불가피하며 이를 해결해야 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생각한 이유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현재의 농협에 대한 비판 및 부정적 의견으로 인하여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라는 부분에서 부정적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적으로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졌을 때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도임을 지적하고 있다.

<표 50>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농협과의 관계에 대한 응답이유

○ 경쟁관계라는 의견

- 지원금에 대한 경쟁이어서 불가피하나, 현재 지역농협은 이미 농민(조합원)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어 수정 개선이 불가피하며, 업종별 협동조합은 이에 대한 조(수)정 기능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초기에는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어야겠지만,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본체도에 오르면 경쟁구도가 되어야겠죠
- 생산자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 위축될 것임
- 경쟁적관계가 형성되어야 소비자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경쟁이 되어야 불필요한 조합이 양성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역 토착세력이 생겨나지 않음
- 사업적 내용으로 경쟁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때 개별 협동조합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시군단위 또는 도단위로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협동조합 간 연대에 관한 교육 및 지원을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함. 신설 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와 밭그릇 주장을 타파하면서 기존 지역농협과 경쟁관계 구축으로 지역농협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및 제도가 구축되어야 함
- 한 지역 내에 다른 목적을 가진 조합이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과 지역 시장이 겹치기 때문에 암묵적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른 대도시 소비시장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신흥협조합과 기존농협과의 차별성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쉐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조성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지역농협은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대해 경쟁자로 인식
- 지역농협의 배타성, 경쟁의식
- 동일지역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경쟁을 할수밖에 없을 것임
- 기존 지역농협은 대개 읍면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관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농협 스스로 협력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로 나아가려 할 것이다
- 시장독점지위를 갖고 있는 농협이 신생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조합원 유출이나 사업진출을 우려하고 경계할 것
-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농협은 연말 결산을 위하여

보험, 대출, 카드사업 위주의 신용사업 속에서 방안을 마련하는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지역농협이 구매, 판매 등 경제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단기간 내에 상호 필요성의 일치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농가가 직접 생산하여 직판할 경우, 기존의 농협은 농가 물건을 수집 판매 해 주는 위탁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짐
- 비슷한 사업의 진행과 업무가 겹칠 수 있음
- 기존의 농협이 협동조합간 협동에 거의 관심이 없으므로 오히려 견제할 가능성이 많음
- 사업여건상 기존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경제사업)
- 시장은 작고 운전자문제도 있다. 이미 각종 이해관계로 영업을 한 농협과 부딪치지 않을 수가 없다
- 조합원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할 것 같다. 물론 서비스에서 양질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합원(대상)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나름의 경쟁관계가 조성될 것 같다
- 기본적으로 위상의 차이에 따라 협력적 관계가 가능하지만, 참여자들이 중복되어 다양한 경제활동 등이 경쟁적일 수밖에 없을 것
- 실제로 새롭게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농협의 조합원이었던 경우가 많으며,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에 실망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이들은 구매와 판매 영역에서 스스로의 필요를 구체화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농협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농협은 기존의 지역 수요와 공급을 독점하던 세력으로 상호협력적 관계설정을 위한 노력보다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의 입지를 단탄하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협동조합이 성과를 낼 경우 지역농협의 견제가 예상됨
- 현실적으로 지역농협의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협력적 관계가 되는 것이 맞으나, 경쟁관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기본법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진정으로 자립적, 자율적 운영이 전제된다면 당연히 기존의 비능률적이고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는 농협과는 경쟁에 의하여 존폐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임

○ 상호협력관계라는 의견

- 경쟁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상호 협력의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 양자간 경쟁적관계가 성립될 경우 상호 손실 발생으로 입법취지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
- 지역을 근거로 상호 협력, 역할 분담의 구상이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는 명확한 영역구분, 제도적 구분 없이 농협기능의 대체, 경쟁, 농업인의 자립 도구로 생각되는 측면이 있음
- 지역농협이나 협동조합 모두 조합원의 이익 창출 없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상호 협력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지역농협은 이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기본법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과는 사업영역이나 규모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기본법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이 기존 농협조직과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며, 협력적 관계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기존 농협조직이 기본법상 협동조합을 건제하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및 지원방안을 갖출 필요가 있다
- 농업 생산 저장 가공 유통 관광 복지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생기는 기본법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농협과의 경쟁적 협력관계, 협력적 경쟁관계가 일정정도 형성될 것이나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에 의거, 상호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함
- 농협이 점점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농민의 자발적 조합의 수요와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농민 역시 안정적 수급을 위해 농협을 간과할 수 없게 되면서 차차 전략적 협력 관계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 보기 때문
- 농협의 금융기능이 협동조합에 적절한 지원자원이 될 수 있어야 함. 금융과 컨설팅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임
- 기존의 지역 농협에서 잘 가꾸어온 유통, 판매, 인적관리등을 정부의 지시없이 쉽게 공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서로 협조적이게 장기적으로 농협도 살길이라 본다
- 처음에는 다소 배타적이기도 하겠지만, 서로의 생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농촌발전을 위해 타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농협의 지원역할(자금지원,

- 교육, 회계교육 등)이 중요하다
- 국내 특성상 지역 농협의 규모로 협동조합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협동조합이 지역농협과 협력하게 될 것임. 다만 이와같이 될 경우 조합의 역할이 기존 개인과는 달리 큰 목소리를 낼수도 있을 것임
 -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우선 지역농협의 빈자리부터 채워가기 시작할 것이고, 지역농협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분업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동일 지역내에서 농협과 역할분담으로 신설협동조합의 사업내용이 진행되어져야 하기 때문
- 농협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다른 사업 영역을 가질 것이라는 의견
- 사업 영역이 같지 않음
 - 사업영역이 다른 분야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 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실제 농업생산분야보다 사회, 문화, 복지 분야에 더 치중될 것으로 예상.. 농업생산분야는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범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됨
 - 지역농협과 분야가 다른 틈새분야에 협동조합의 역할분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차이와 운영 및 내용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
- 농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한계
- 농협과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남
 - 기존 지역농협이 보유한 자금과 인프라가 월등히 우월하고,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기존 지역농협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협력적 관계 또는 지역농협이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임. 이 때 단순 기표식으로 지역농협의 외형을 살찌우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됨
 - 협동조합은 금융을 할 수 없으며, 농협은 이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 기본적 경쟁의 수준이 아니며 따라서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함
 - 이미 농협은 재벌가로 부상되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을 것

- 농촌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농협의 우월적 지위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현실
 - 이미 유통여건이 형성되어 있고 생산자는 판로와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농업인들끼리 하는 조합은 한계가 있다고 봄
 - 현재의 농업, 농촌에서 농협은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
 - 협동조합은 동일 혹은 유사 기관(협동조합포함)과의 상생관계, 도농상생관계 등이 유기적인 결합 형태가 조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결국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누가 맺어 주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 농협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의견
- 현재의 농협은 남 잘 되는 것 보면 비슷하게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음
 - 조합원의 참여 목적이 분명하며 자발적 적극성에서 농협과 차별화될 것임
 - 현재의 농협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도 하기 전에 농협과 경쟁적 관계로 되어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 지역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기에, 초기에는 경쟁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현재 기존 협동조합에 대한 반감 해소가 빠르지 않을 것임
 - 기존의 지역농협의 경우 대부분이 농업활성화와 발전을 창의적인 사업추진보다는 피동적이면서 조합장 인기위주, 군림하는 자세로 사업 실시하고 있음
 - 지역농협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
 - 현재 농협이 설립당시의 기본을 잊고 은행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농민에게는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단체가 되었다
 - 조합원에는 퇴비나 기타의 농자재를 구입하려면 일반 철물점보다 오히려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왕왕있다 조합을 여럿이 만들었으면 다른 곳보다 비싸지는 말아야 조합원들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다 조합이 만들어지면 사용되는 모든 농자재는 조합에서 일괄 구입하여 분배하는 구조로 만들면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단가조정이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라 본다
 - 농촌은 현행 지역농협의 행위에 벗어날 수 없고 농업인은 도리어 더욱 더 어려운 농촌생활이 될 것이다

- 현재의 농협이 농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제시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위반되거나 반하는 사항을 지역농협이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농협은 현재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은행과 다를 바가 없다
-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자기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
- 기존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는 조합이 많아 새로운 협동조합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클 것임

○ 기타의견

- 지역농협이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농산물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환원 사업의 영역으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를 사업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대농 중심의 협동조합이 구성될 경우 되레 영농법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갖고 있음
- 협동조합과 지역농협과의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특권을 따지면 지역농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 협력과 경쟁이 필요해 보이며 같은 조건이라면 협동조합에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 현 농협이 농업협동조합답게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농촌지역에는 특별히 협동조합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 농촌지역에 새로 설립될 협동조합이 생산자협동조합일 경우에는 기존의 농협과 경쟁관계가 되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향후 협동조합의 과제와 방안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기타 과제와 방안에 대하여도 설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표 51> 협동조합의 기타과제에 대한 의견

- 협동조합간의 협동,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농협, 신협) 등의 많은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함
 -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에 대한 인식부족, 경험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농촌지역은 젊은 지역주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귀농자를 협동조합의 실무자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농촌귀농자들은 농촌지역내에서 잘 적응하면서 마을지역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협동조합의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라도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다양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하다
 - 도농간의 네트워크에 필요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기능이 우선 되어야 함. 그 속에서 기존 농축협과 기본법협동조합의 역할분담과 기능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신용사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태생적으로 상호부조의 기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농협조직 등 신용사업기능이 포함된 협동조합이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거나, 설립에 참여하는 방식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모델 및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협동조합금융 또는 협동조합기금 조성, 시군구, 시도 협동조합 협의회나 네트워크 등 생태계 조성
- 농촌에 혁신가가 태생할 수 있는 토양 조성
- 현재의 상태로서는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하여 제기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신규 사업을 계획했다라도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은 지역농협 등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지역농협은 득실을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순탄치 않을 것
-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동이 기존의 지역 농협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필요
-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필요 일부만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함 정부의 기금조성 및 지자체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협동조합 육성 기존 8개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개입 및 간접 배제 등
- 기존 협동조합들의 배려와 참여가 되는 생태계구성이 필요하다.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며, 수익창출모델과 사회적목적성 모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 일본과 같이 NGO와 NPO를 적극 육성하여 중간기지로 삼고 중앙 집권적이 아닌 지역기반형 체계가 자리잡아야 함

○ 제도적 정비

- 건강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접근이 보다 용이하고 다양성이 요구됨. 다양성 : 농업인의 다양한 계층에서 농업에 투자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 부여 등
- 기존에 있던 영농조합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임. 왜냐하면 현재의 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종 혜택이 기존 영농조합법인 등에 비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 농촌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위해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 보조금 지원이 아닌 세제혜택 등 간접적 지원책의 다양한 시행이 필요
- 농업법인등에서 일어났던 각종 부적절한 정책 등의 배제

- 현재 농촌 인구가 적고 연령이 높고 기존 단위농협 문제 등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 그 대안으로 귀농자 유입 및 농단 조성으로 품목별 지역별 농단조성법 필요

-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은 결국 지역 농산물을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이라고 본다. 결국 도농상생의 기존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서로 필요에 의한 유기적 관계 조성이 성패에 달려 있다고 본다. 실제로 직거래라는 형태의 우리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극소수 외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직거래 장터가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보기 보다 장사꾼들의 장터로 전락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왜 그런지에 대해 심각하고민에서 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 농민들의 자조적 활동에 대한 지원확대가 우선 시행되면서 충분한 교육과 홍보 및 판로개선이 동시에 담보되어야 할 것임

- 법상 귀농자 외부인의 조합원 참여 자격을 명시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농민자격처럼 지역민이 배타적으로 나온다면 답이 없다

-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농업관련인만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기타 종사자인 각계 전문가(세무, 회계, 변호사 등)도 참여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통 및 관리체계 필요

- 조직설립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권이, 보조금이 필요해 설립되는 조합들이 상당수 될 것이다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꼭 필요한 조합들만이 남아서 운영될 것이다 필요해서 모인 조합들만이 영위될 수 있는 제도와 혜택 쪽으로 방향이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됨

- 면단위 지역의 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 산재되어 있어 좁은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서로의 경쟁이 매우 심하며, 만약에 농촌지역에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서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어차피 본 안 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시행을 할 방침이면 다양한 보완 계획 속에 시행 하였으면 한다

- 협동조합발전을 위해서는 보조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을 주기위

해서는 일을 하고 발전한 만큼만 줘야한다. 보조금 받고 하고 보자는 식으로는 안되며 지금에 지역농협을 개혁을 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한다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체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판단이 뒤따라 효율적 육성과 관리가 동시 진행되어야 함. 협동조합과 일부 맥락을 같이하는 사회적기업과 범주를 같이하여 이중지원을 없애고 지원의 효율을 높여야 함. 전국 단위의 협동조합육성기금을 마련하되, 해당 기금의 재원은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하는 대기업 등에 대한 제재금/벌금과 법적 기부금의 지위를 부여하여 세제혜택과 캠페인을 통한 자발적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봄. 또 다른 세금으로 전락한다면 협동조합에 대한 반감은 커질 것이기에 조세적 성격의 기금마련은 절대 안됨

- 향후,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 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기초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등장해야하며, 나아가 기존 농협을 견제할 수 있을 협동조합이 설수 있도록 육성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한다

○ 협동조합 원칙에 맞는 설립

- 무분별한 협동조합 설립보다는 지역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경우, 기존 영농법인의 사례와 다를 바 없음. 필요에 의해, 자생적인 설립을 유도하는 것, 예를 들면 교육 등을 통해 본래 취지에 맞고 지속가능하도록 디자인 필요

- 현재 지역농협이 접근이 어려운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으로 기존지역농협의 판매사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협력적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

- 협동조합의 장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육성한 후 지역농협과의 윈윈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홍보와 컨설팅 실시

- 우후죽순 생겨나는 조합에 대한 일부 규제와 올바른 조합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지원(제도, 설립과정지원 등)필요 선진유럽등지의 조합사례에 대한 검토와 벤치마킹 필요
- 농촌지역에 부족한 복지나 교육 등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정부의 직접지원 및 역할

- 농산물의 특성상 물류비용의 포지션이 크므로 협동조합의 시작점에서는 무엇보다 물류비의 부담이 클 것임. 물류비용에 대한 지원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대기업, 농협 등과의 경쟁에서 절실한 부분이라 생각됨
- 농촌지역은 특성상 공공서비스(교육, 복지, 문화 등) 분야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자체 또는 정부 지원이나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농촌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 농업인의 직접생산품 유통을 통한 로컬푸드의 활성화로 직접생산자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유지
- 큰 사업의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작은 사업들은 만들어 지원하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농촌형 돌봄서비스 및 낙후 지역 교통증진을 위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음. 이를 위해 지자체의 의지와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 아직 많은 이들이 잘하고 있는 실재를 보지 못하고 있기에 잘 구성된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고 독려해서 구현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인위적 기업농 및 규모화 정책을 폐지, 선진국 수준처럼 농촌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과 주거환경개선, 농업가공산업의 대기업진입금지 등 제도정비해야 함
-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이 투명하여야 하며, 이권 등에 연루되지 않고 지역 농업인분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 되

도록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협동조합을 운영할 인재 양성

- 지역사회 전반의 필요를 개발하고, 이를 경제활동으로 조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함

- 협동조합을 리드할 건전한 성실한 운영주체가 무엇보다도 필요

- 범국가적 차원의 협동, 상생의 공감형성 중요 제도적 장치 강화 이외 현장 교육 전문가, 활동가 양성을 통해 지역에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는 동력마련 필요

- 농촌지역에서 우선 인적자본 확충, 역량강화가 시급

- 농촌지역에 협동조합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우선 양성하고 목적에 의하여 지역주민 또는 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

-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준법정신과 협동조합정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농촌에서 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협동조합의 기초가 자조정신임을 강조하는 정신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일단은 농민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육을 이수한 이수증인 곳 조합원의 자격으로 만들어서 조합의 생태와 앞으로의 조합이 나가야 할 길을 조합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다

-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이다. 젊은 농업인의 육성. 교육, 오로지 교육입니다. 지도자 양성, 인재 양성

- 지나친 정책 의존은 자율성과 경영독립이 어려워 지속가능하지 않다. 농촌의 실질적 지역수요에 따른 산업과 서비스의 육성 차원에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리더가 필요한데, 노령화에 따른 역량있는 지역출신 도시 은퇴자의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

- 농촌지역주민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농민교육프로그램과 지역농협과 상호 협동 관계를 유지하여 결국 살기 좋은 농촌 농심이 있는 농촌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도자를 양성하며 아울러 농촌주민 참여연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역의 리더와 농민들을 위한 교육과 인재 양성이 시급하며, 단기에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정신적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 자세만 잘 세워져 있는 협동조합은 현재의 시장경쟁구조에서도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존의 조합처럼 무상지원을 바라고, 정치적 세력에 이용당하고, 중앙회의 횡포에 능략만 당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영국과 독일에서 처음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의 기본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현대적 경영을 위하여 전문 경영인 도입도 필요하다

- 지역 내 리더를 발굴함과 동시에 젊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는 외부 활동가의 지역 유입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내외부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며 소요가 있는 곳에 인력을 파견하고, 해당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보완되어야 함

- 협동조합은 일종의 동업으로써, 특히 조합원들의 인격적 성숙도와 책임감의 수준에 의해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 협동조합 지도자 양성과 교육중요. 지속적인 협동훈련과 학습

- 건전한 협동조합을 설립, 유지 할 수 있는 활동가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 지역의 리더와 농민들을 위한 교육과 인재 양성이 시급하며, 단기에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 협동조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협동조합 관련 교육, 훈련, 컨설팅과 관련해서 협동조합형 사업의 기법, 정부 정책 지원 방침에 대한 교육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인격적 성숙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협동조합형 인간으로 개개인의 조합원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협동조합 교육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특히나 전통적인 두레나 향약에서 이어지던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개인주의화돼가는 농촌사회의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존 농축수협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비리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농업 농촌 협동조합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의 농협 등 조합이 앓고 있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도록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조합이 조합원에 기생하지 않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이란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적 선(善)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상생의 훈련과 교육이 가장 절실히 요구는 되고 있다

- 무엇을 담든 그릇이 되어야한다는 것, 즉 지역민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의식이 없는 협동조합은 사상누각. 제도의 중요성 보다 현 농어촌 주민들의 의식함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공사례, 교육사례, 교육자료, 교육강의, 활동가 양성이 절실하다

-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농촌에서 협동조합 하면 떠오르는 건 '농협'밖에 없다.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필요함. 협동조합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므로 '해볼만 한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농업인 스스로가 자발적인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의식화 시켜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임

- 협동조합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홍보가 필요함. 현재는 새로운 경제대안 등등 부풀려지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홍보가 주종을 이룸.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엄격히 유지하되, 상품판매에 국한되지 않은 일상생활 속 협동조합의 종류와 발족의 동기, 성과 등 다양한 성공모델에 대한 보급 및 캠페인이 필요함

- 지역의 생명순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 농민의 생태적 각성과 농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교육

- 주민교육과 정보 필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필요

- 농민들에게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 기본법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 농업, 농촌에 적합한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기본법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협동조합교육기관 설립

○ 기존 협동조합의 개혁과 변화

- 현재 우리나라의 농협은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와 속성을 거의 완전히 상실한 채 농협중앙회를 위시하여 전국 단위 협동조합이 대다수의 구성원(농민)으로부터 크게 불신을 받아왔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차체에 정책적으로 업종별 협동조합을 양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협동조합 본연의 이점을 살리고 바람직한 협동조합을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인식을 달리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하면 중앙회를 비롯하여 명실 공히 협동조합 다운 농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단위로 농협이 통합되고, 전문부서를 두어 운영함이 좋겠다

- 현재의 농협중심이 아닌 순수한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 기존 농협, 축협, 수협 등의 개혁이 필요

- 기존의 협동조합을 농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 우선되어야하고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을 해체하여 농민에게 돌려준 후에 새로운 농협을 만들어야한다

- 기존의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의 취지에 맞는 역할 회복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명확한 목표의식 부여

- 기존의 농협 유통은 본연의 고유 업무 중 생산량 조절을 하여 폐기처분 되는 농산물이 없도록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됨. 그래서 협동조합은 생산량 조절과 도농간에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면 잘되리라 본다

- 지역농협은 시군당 1-2개 합병하여야하고 조합장의 선거제도를 돈 안드는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함

- 기존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강화가 더욱 필요하며, 지역농협조합장은 비상근 명예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학자님과 연구원님들께서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버리고 집단지성인으로 현재의 농협협동조합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 현재 직선제의 미명하에 일어나는 제반 문제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은 협동조합 정신에 맞는 호선제 적극 도입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장 가운데 선출하고 외국과 같이 조합장 신분을 겸임하도록 이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현재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의 시초가 될 것임.
- 기존의 협동조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기다

- 협동조합이 이번 정부의 단기간적 보여주기가 아닌 지속적이고 선순환으로 전환될 고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견인
-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기 때문에 이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는 각종 혜택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
- 농촌지역에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운영할 역량을 갖춘 인력이 있는가가 의문이고 있다면 외지에서 들어온 귀촌하신분이나 새로이 영입된 인력이어야 하는 관계로 지역 농업인과의 관계가 심히 걱정된다. 지역 농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로 조합을 설립하는데 농업인들이 들러리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자로 함께 하는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진정한 조합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 민 모두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조합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요구됨.
- 인식의 전환과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함
- 정부는 지원하되 감독하는 관성이 없어야 함

- 협동조합이 농촌을 위한 조합이 되어야하는데 조합을 위한 조합이 되어서는 안된다

- 농어촌에 필요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하기엔 마을단위에서 규모로 인한 한계가 있는 사안(일)에 대하여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추진토록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제화와 용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격이 같다면 기존농업법인과 차별성이 전혀 없고 기존농업법인과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면 비농업인을 농업법인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돈만 초래할 것입니다. 농업생산이 아닌 다양한 산업분야의 동종 또는 이종간이해관계자들의 법인이 기본법상 취지라 사료됨

- 자주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으로 제정되면, 정부에 의지하게 될 우려가 있으나, 자주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 1.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협동조합에 가입 설명회를 가져야한다 2. 생산 작물을 선정한다. 3. 저장시설을 지원하고 4.지역 농협을 통해 유통, 판매를 담당하게 한다. 5. 자체 브랜드 홍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

- 먼저 농촌지역의 필요를 정리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거나 확장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농촌지역의 필요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이를 해결해갈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은 반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인내자본 형성을 위한 건전한 보조금 지급방법을 고려해야한다

- 지역농협과 중복된 사업의 문제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기존의 인구구성상, 소수의 판매협동조합을 제외하고 계속법인으로서는 존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지역농협과의 관계설정 등이 중요할

것이다

- 조합원과 임원의 교류가 필요함
-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병을 앓고 거기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야 한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가 다음의 성공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은 금물
- 농촌지역의 생산자조직의 협동조합보다는 소비지 위주의 소비자 협동조합의 육성지원으로 도농교류 확대를 기대효과로 하고 농촌지역은 기존 농협을 통하여 1사1촌 농도교류확대와 작목반중심으로 교류확대가 절실하다 사료됨. 그 이유 중 하나를 예를 들면 소비자측은 다 품목원 기대하지만 생산자측은 단일품목의 동질성 조직이 용이하므로 복잡적으로 협력은 제3자 개입해야하나 운영 및 관리비등 이해관계로 기대효과 기대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함
- 협동조합 설립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우며 설립된 이후에는 불투명한 운영과 분배의 의구심으로 구성원들간의 반목이 심화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성공여부는 구성원들간의 상호민음에 있다

4.3. 설문조사 결론 및 시사점

협동조합의 지역 기여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리고 주민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을 가장 큰 기대효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실제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한 어려움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낮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동시에 지역주민 및 지도자의 역량배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협동조합 활성화의 선결조건으로 정책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주민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 등의 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협동조합의 인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설문응답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교육훈련 및 컨설팅과 같은 협동조합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간접적 지원서비스를 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다.

현재 협동조합에 대하여 정책 및 제도가 불리하여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정도는 크지 않았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별도의 규제나 엄격한 설립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농업법인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제도적 지원혜택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에 따른 관련법 및 규정의 개정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증가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농협과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필요적으로 협력을 인식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관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농협과 협동조합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5. 기본법상 협동조합설립에 따른 주요쟁점 및 이슈

5.1. 농업농촌관련 관련 설립가능 주체의 확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농촌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각 법인별로 설립의 목적상, 그리고 사업의 특성상 분류를 하면 아래 표와 같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의 중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특별법으로 존재한 농업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등과 그 운영원리가 유사하다.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협동조합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본법상 협동조합들이 설립될 것이다. 이들은 설립목적 및 사업적으로 가장 유사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부분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표 52> 농업생산분야 설립가능한 법인의 영역 변화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의영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비영리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농업협동조합</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영농조합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농업회사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상법상 회사</div>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법 도입이전</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의영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비영리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기본법상 협동조합</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농업협동조합</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영농조합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text-align: center;">농업회사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상법상 회사</div>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법 도입이후</p>
--	--

현재 농업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정책 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동일한 구성원 및 사업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조직에서는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상의 형평성 및 동일한 환경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적 경합 및 갈등의 요소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른 법에 근거한 다양한 주체간의 사업적 협력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5.2. 협동조합과 농협의 관계 이슈

5.2.1. 설립요건 및 제도상 사업경합 가능성

협동조합 설립이 확산되면서 기존 농협과의 사업적 관계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많이 발생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농협과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사업의 경합 여부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민간진영의 초기 목적은 2차산업과 3차산업에서 자유롭게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박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존의 개별법과 가급적 경합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고 협동조합기본법이란 명칭에 부합하는 조문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개별법과의 사업경합 문제가 확대되었다.

당초 민간진영의 논의를 대표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가 입안한 법안에서는 제4조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항목에서 '이 법은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협동조합법에 우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경합관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 확정안에서는 기본법이란 명칭에 부합하고 조문간 법리적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13조 1항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표시되어 사업경합의 가능성이 보다 커졌다. 즉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존의 개별법이 포괄하는 사업 분야에서도 기본법을 토대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현재 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영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5인이면 누구나 시도지사 신고절차를 거쳐서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구성에 많은 설립동의자가 필요하고 농식품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농협에 비해서 설립이 무척 용이하기 때문에 동일 사업분야에 다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들이 농협의 사업과 지속적으로 경합관계를 가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관련된 법이 제정된 초기에는 협업적 생산경영체로서 영농조합법인이 기초적 생산조직이 되고 농협과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취지로 육성되었다. 하지만 영농조합의 사업에서 생산 외에 유통 및 기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전문적인 유통사업을 하는 대형조직이 출현하게 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농협의 농산물유통사업과 경합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기본법상의 협동조합도 제도적으로 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농업법인과 같이 농협의 경쟁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면 현재 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관련 사업은 경합의 여지는 없다. 기본법 제45조 사업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따라서 현재 농협과 수협, 농어촌지역의 신협과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사업과 관련한 경합은 배제되었다.

5.2.2. 사업여건상 실제 사업경합의 가능성

농협과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유통 및 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다시 일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소비지에 차별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협동조합은 농협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합된다는 측면에서 사업적 성공에 이르기에는 가장 많은 저해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농협에 실질적인 경합관계를 가지는 수준이 되려면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번째는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농협보다 우월한 혹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경제사업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금의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조합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농협의 자산과 조합원의 규모를 따라잡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외연적 규모가 아닌 내포적 규모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참여 조합원의 조직화 수준이 높아 평균출자금 및 평균이용금액이 획기적으로 높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농업정책의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사업적 역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에서 유의미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업적 지원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즉 기존 농협 혹은 영농조합법인에게 부여된 것과 같이 동일한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개선이 없이는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다른 농업경영체와 농협에 비해 동일한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합원에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관련 성과가 종합농협의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제사업에 대한 교차보조 수익을 넘어서야 한다.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신용사업과 보험업'의 활용이 봉쇄되어 있어, 경제사업

의 수익만으로 조합이 운영되어야 한다.

경제사업의 성과창출과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도구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확산은 지체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경합관계가 조성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를 종합하면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현행 농협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중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협의 경제사업의 성과가 조합원의 개별 활동보다 낮고, 앞에서 제시한 3가지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 경우에는 경합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농협이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경합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농업계 전체의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농촌의 전체적 발전이란 관점에서 볼 때 농협이 협력구도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수행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주 사업으로 하며 일반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기존의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부는 위의 조건들을 극복함으로써 농협과 동등한 경쟁력을 지닌 조직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협동조합들이 단기간에 이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다만 가공과 유통을 농협에 위임하고 생산에 전념하는 협동조합은 농협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중산간지 이상의 농촌지역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의 마을영농 경영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집락영농의 한국판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방식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지 않지만 고령화 문제와 농업생산력 유지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농협의 기존 유통사업과 경합하

4) 김기태(2012a)의 내용을 전제

지 않으므로 소규모 생산협동조합으로 농협과 전략적 제휴가 형성될 경우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활성화 전략에 따라 급속히 확대될 수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소비지에 차별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혹은 이를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전자에 비해 나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농협과의 경합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농협의 지원을 받기에 용이하며, 호혜적인 소비처가 사전에 있어 생산과 가공에 관한 사업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확보도 사업량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5.2.3. 협동조합 명칭사용에 따른 농협과의 갈등

협동조합 기본법 상에서는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기본법 3조). 대신 이 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등의 행정구역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기본법 시행령 2조)라고 명시하고 있어 당장의 명칭의 혼돈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농협법에서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농업협동조합'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다만 '농민협동조합', '농업생산자협동조합', '농촌협동조합'등 유사한 명칭으로 설립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지역 내에서 사업적 경합 및 기타사유로 문제가 될 경우

5)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만 해당된다(농협법 3조 2항).

법적인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을 때 법적인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명칭에 대해서 신고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⁶⁾

<표 53> 협동조합 명칭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조문

제3조(명칭)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174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2.4. 상호 조합원의 가입 가능여부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이는 제20조에는 개인과 법인이란 명시가 없는데, 제25조 조합원의 탈퇴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이후 농협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생협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농협이 의료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협의 조합원에게 일괄적인 의료사업의 혜택을 보게 하

6)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면, 2013년 2월 12일 경상북도에서는 동해안축산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신고가 들어왔으나, 경북도청에서 이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가 이후 동해안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재신고되어 3월 12일자로 수리된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조은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신고되었다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의 유사명칭문제로 인해 수리가 보류되었다가 이후 조은협동조합으로 재신고를 받은 사례도 있다.

는 조치가 가능했지만, 생협법이 제정된 후 개인만 가입하게 되어 농협과 의료생협간 협동이 약화된 사례가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협이나 농촌의 기존 협동조합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서 가입하여 출자나 이용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동조합간의 협동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협동조합에는 농업인이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농협법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 외 다른 법인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협동조합이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한 요건과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

5.3. 관련 법인의 설립수요 대체 및 기존조직의 전환

5.3.1. 농업법인의 설립수요 대체 전망

설립의향에 대한 설문 및 현재 설립 추세로 보아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수요 중 상당부분을 협동조합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의 기준요건이 농업법인과 비슷하고 협동조합은 설립에 특별한 제한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 및 농촌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설립수요가 나타난다. 다만 현재 기존의 농업법인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세제혜택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려가 많은 상황이며, 만약 이러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기존의 농업법인과 유사한 조건이 마련되어 지원혜택이 제시된다면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려는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법인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법인을 청산할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권이나 각종 인허가 사항이 신규 법인에서 새롭게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협동조합 전환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5.3.2. 기존 타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성

기존의 법인 중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조직은 기존의 법인이 전환이 가능한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부칙2조에서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 상법상 회사,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각종 특별법상 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생협 등)의 경우 전환이 가능한 법적형태이다. 다만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허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2년 (설립신고 기준) ●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1년 (설립신고 기준)
사업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유사할 것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11.30일까지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 > 민법의 사단법인 > 특별법의 법인(생협 등) > 상법상 영리회사(주식,유한,합명,합자 등) > 공동운영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소유, 자활공동체) > 비영리민간단체(사업자등록증 소유) >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단(인적,물적 독립 운영) ※ ‘재단법인’은 불가

<그림 6>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가능한 법인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전환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특별 법인으로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5.3.3. 협동조합의 타법인 전환 가능성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및 전환과 관련해서도 기본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상법과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이 다시 다른 법인으로 전환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탈상호주의를 엄격하게 법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농촌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법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다시 전환할 수 없다. “만약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농식품부에서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다양한 농림사업시행지침 상의 지원제도가 정비된 농업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타 법인격에서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반면 기본법의 협동조합이 개별법의 의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다른 개별법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재 법체제 하에서는 별도의 법인으로 신설하는 방식이 되므로 이를 법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전환수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운영모델

1. 농촌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향

1.1. 농촌지역의 문제점과 협동조합의 기여

앞서서 제시한 대로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가지는 기대효과는 지역경제에의 기여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협동조합의 역할 및 사업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농촌지역은 지역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과제에 봉착해 있다. 이는 농업의 쇠퇴, 농촌주민의 탈농에 따른 고령화와 과소화, 농촌지역 인적역량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은 농촌 지역경제를 나타내는 주요지표인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 소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1990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도시근로자의 70%수준으로까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농업이 아닌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농촌근로자가 도시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나타내는 등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측면에서도 농촌지역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읍·면의 취업자 수는 총 4만 714명이 감

소하였다(김정섭 외,2011). 이는 농촌지역에서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농업의 쇠퇴로 인한 농업종사자의 감소에 의한 영향이 크다.

다만 특이한 점은 농촌지역의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이에 대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김정섭 외,2011)는 점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영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농촌관광의 활성화와 함께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사업이 확산되었다. 당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산업 등을 통하여 관련 사업들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자체의 다양한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의 증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추구, 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산업확장에 대한 대응측면에서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정리해 볼 수 있다.

- 1 농촌 자체의 요구인 지역재생
- 2 지역재생의 주체인 농촌주민의 경제활동의 활성화
- 3 농촌자원을 활용한 수익모델의 창출
- 4 지역주민 중 고령자나 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의 실효성 있는 적용
- 5 정부의 각종 공적기관의 서비스가 농촌으로부터 이탈할 때 이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
- 6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구는 있지만 영리기업이 담당해 주지 않았던 Missing Market에 대한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충족

<그림 7>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는 1) 농촌 자체의 요구인 지역재생 2) 지역재생의 주체인 농촌주민의 경제활동의 활성화 3) 농촌자원을 활용

한 수익모델의 창출 4) 지역주민 중 고령자나 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의 실효성 있는 적용 5) 정부의 각종 공적기관의 서비스가 농촌으로부터 이탈할 때 이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 6)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구는 있지만 영리기업이 담당해 주지 않았던 Missing Market에 대한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충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2. 지역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향

이런 농촌지역의 요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실행주체인 주민들의 해당 농촌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1) 비전과 전략의 적정수준의 합의와 2) 실행력의 확보, 3)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적정한 정비, 이를 가능하게 하는 4) 중앙부처 수준의 법제도 및 정책의 정비, 5) 농촌지역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공적 혹은 민간 시장의 존재 등의 과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1 지역주민들의 농촌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의 적정수준의 합의
- 2 지역주민들의 실행력의 확보
- 3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적정한 정비
- 4 중앙부처 수준의 법제도 및 정책의 정비
- 5 농촌지역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공적 혹은 민간의 시장의 존재

<그림 8> 농촌지역 요구를 실행하기위한 고려사항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한 일본에서는 ‘지역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코야마 료타는 지역만들기의 목적으로 “① 지역에 뿌리내린 생활과 문화를 지킨다, ② 지역의 자원을 소중히 하고 후세에 전하고 싶다, 등의 내재적인 욕구가 밑바탕에 있다. 그 위에 ③ 안심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경제활동은 이를 위한 것이며, 발전 및 성장은 그 수단)라는 구체적인 요망으로 승화된다”고 제시하고 있다.(코야마 료타:2010:pp4~5)

이런 목적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지역산업의 진흥과 고용의 확보’는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지역산업에 대해서 이토(1997)은 “지역의 자연자원, 노동력, 인재 등의 생산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그 활용방법도 지역 내에서 보다 체계화되어 있...(어-인용자) 지역에 뿌리내린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등 부가가치를 지역내에 머무르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를 6차산업화라 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관점과 정책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정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그 주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가죽산업이나 가구산업 등 지역혁신체제나 지역클러스터의 선진사례로 언급한 지역의 다수는 사업자협동조합 유형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다양한 측면에서 향후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인 ‘실행력의 확보’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작성하는 데 가장 심각한 이슈가 된다. 현황에서 파악한 것처럼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의 성장을 제약하는 핵심 요소인데,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 존재할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농협이 최소한 읍면지역 이상을 범위로 하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질화에 따라 거래비용과 소유비용이 과다하게 발

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새로운 협동조합은 이런 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섯 번째 문제인 “공적 혹은 민간 시장의 존재”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발달단계상 기존의 대규모 공식적 유통채널을 새로운 협동조합이 직접 거래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 직거래 유통의 다양한 채널에 집중하고 기존 공식적 유통채널에 대해서는 농협이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행력의 확보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 때 생협의 호혜적 판매계약을 통한 협동조합간의 협동은 안정적이며 새로운 대규모적인 유통채널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거래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농협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⁷⁾

이런 구조를 활용한다고 해도 초기 협동조합의 조직, 소규모 협동조합의 운영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합원활동의 자발적 전개 등은 기존 농협조합원과 다른 조합원-협동조합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협동조합지도자의 양성은 실행력의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협동조합은 지역의 재생과 지역경제활성화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만능도구가 될 수는 없으며,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수행하여 경영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협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단기적으로 사업적 여건이 구성되지 않거나 주체의 노력을 통해 구성될 수 없다면 지자체의 공적업무가 되거나 비영리조직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런 지자체의 공적시장의 지원수준과 지속가능한 경영의 범위가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 측면의 제도화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은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각종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저해요인을

7) 전북 완주군 고산농협은 아이쿱생협과 협력적 유통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해결해 나가면서 공적영역의 실패와 시장영역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이 농촌지역 협동조합 운동의 과정이 될 것이다.

2. 해외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활성화 사례

2.1. 프랑스의 농촌지역 협동조합과 지역개발

프랑스에서는 각 산업별로 협동조합의 설립을 근거하는 개별법과 협동조합에 관한 공통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이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⁸⁾ 프랑스의 협동조합은 비금융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으로 구분이 되며 비금융협동조합에는 농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주택임대협동조합, 생산노동자협동조합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협동조합이 개별법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1.1. 농업 및 농촌 관련 협동조합의 현황 및 체계

프랑스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며, 비농업생산 조직으로 SICA (les sociétés d'intérêt collectif agricole : 집단적 농업적 이해를 갖는 회사)가 있다. 프랑스는 법률적 지위에 따라 일반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맹체(Union), SICA, CUMA(농기계공동이용협동조합)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농촌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역할을 하고 있는 SICA의 사례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농업생산 이외에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8)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과 같은 1947년9월10일법(no 47-1775)에 의해 협동조합의 원리가 법규화되고, 협동조합회사들을 일반회사들로부터 구분하는 원칙들이 법률로 규정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가. SICA(les sociétés d'intérêt collectif agricole)의 농촌지역 비즈니스

SICA는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농민들과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1920년에 창립되었다. SICA는 농민들과 기타 농업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사업체들을 결합한 것이다. 농촌 설비시설공급(전기, 농촌주택 등)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농산물 상품화와 가공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 지위와 관련된 1947년 9월10일 법에서 SICA는 하나의 협동조합이긴 하나 농촌법전의 법률적 의미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아니다. 농업협동조합과는 구별되는 형태로 설립시 개인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회사형태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조합원은 농민 또는 농업은행에 가입된 농민의 그룹체, 농업상호금고, 설립목적에 도움이 되는 개인으로 농업인, 농업관련단체 및 비농업인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다만 농업인 및 단체는 전체투표권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과반 이상을 농민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 SICA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2.2. 일본의 농업생산 관련 법인과 협동조합

일본은 협동조합기본법과 같은 법체계가 있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 협동조합이 설립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있으며 또한 일본이 농업생산관련 법인인 농사조합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 이외의 영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조합도 농촌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2.2.1. 일본의 농업생산관련 법인 현황

가. 농업법인제도와 농사조합법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의 농업생산과 관련된 조직은 복수의 법인 형태들이 존재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각각의 개별법의 형태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법인제도와 유사하게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과 비슷한 형태의 조합이 존재하며 협동조합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농업법인은 가족경영의 협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962년에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당시 일본의 ‘농지법’과 ‘농협법’ 일부의 개정에 의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1960년도에 농업법인 법제도가 제정되려 할 때에 농협은 ‘협동소조합 구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농업법인을 농사실행조합과 같은 농협의 하부조직으로 편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김수석 외, 2006).

일본의 농업법인은 농지의 소유여부에 따라 농업생산법인과 일반농업법인으로 구별되며 다시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으로 구분된다. 농사조합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 1호, 2호, 1·2호 겸영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⁹⁾ 각 조직의 설립근거에

9) 1호(號)법인 : ‘농협법’ 제 72조 8항 1호에 명시된 “농업에 관계되는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또는 농작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업” 즉 기계, 시설의 공동 이용이나 공동작업만을 하는 조합법인

2호(號)법인 : ‘농협법’ 제 72조 8항 2호에 명시된 “농업의 경영”을 하는 조합법인

1·2호 겸영법인 : 1호법인 및 2호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법인

관해서는 농협법, 상법, 유한회사법에 따르며 농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중 협동조합관련 법적 근거규정을 가지는 농사조합법인은 3인 이상의 농업인으로만 구성되며 농협이나 농지보유합리화 법인등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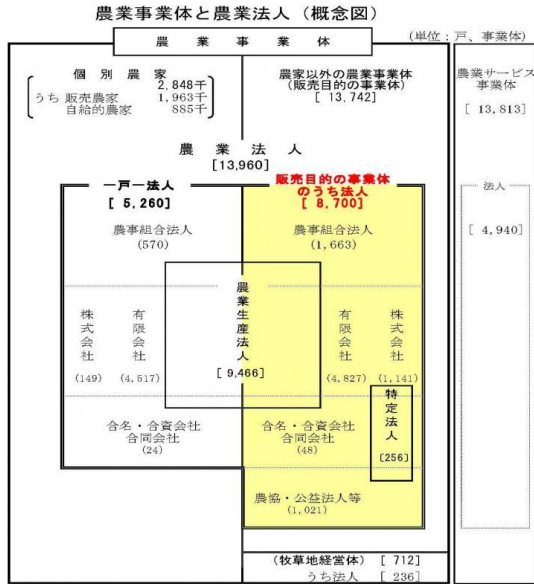


<그림 9> 일본 농업법인의 구성 및 구분기준

<표 54> 일본 농업관련 법인의 현황 (농림수산성, 2005센서스 자료)

	한 세대 — 법인 (농업 경영을 법인화하는 농가)		농가 이외의 농업 사업체 (판매 목적의 사업체) 중 법인		계	
	법인 수	구성비	법인 수	구성비	법인 수	구성비
계	5,260	100.0	8,700	100.0	13,960	100.0
농사 조합 법인	570	10.8	1,663	19.1	2,233	16.0
회사	149	2.8	1,141	13.1	1,290	9.2
유한 회사	4,517	85.9	4,827	55.5	9,344	66.9
합명 · 합자 회사	24	0.5	48	0.6	72	0.5
농협	-	-	450	5.2	450	3.2
기타 각종 단체	-	-	193	2.2	193	1.4
기타 법인	-	-	378	4.3	378	2.7

일본의 농업법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농사조합법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하며 ‘회사법인’은 우리나라의 ‘농업회사법인’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일본의 경우 기존의 법들에 의해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점이고 또한 ‘농사조합법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민법상 조합에 근거하고 있는바 협동조합적 운영에 적합한 법적 설립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일본농업법인의 구조 및 현황

나. 농업법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육성방향

일본은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의 정책 방향 아래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조직과 기구를 갖추고, 예산·세제·금융지원, 정기적 통계조사 및 지원 등의 적극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김수석 외, 2006).

특히 2002년에는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와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여 일본농협(JA) 그룹의 투자를 받아 농업법인의 출자를 통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농사조합법인은 농협과 함께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고 세제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기존의 농협과의 관계에서는 농사조합법인은 농협을 많이 이용하나 유한회사는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다(김수석 외, 2006)

2.2.2. 마을단위 협동경영체 : 집락영농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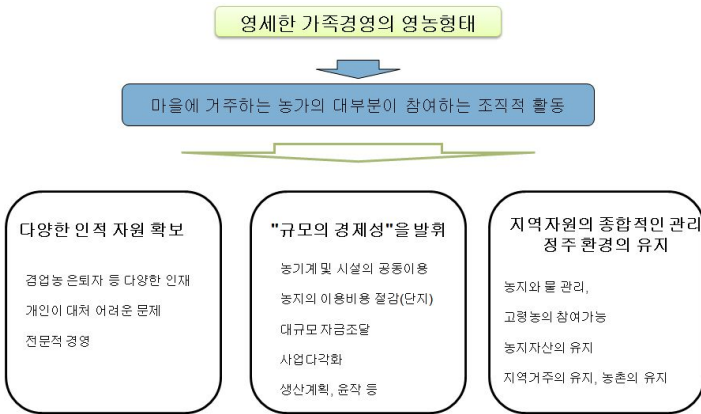
가. 집락영농을 통한 협업적 농업경영

일본은 생산단계에서부터 협업화를 통한 집락영농을 기반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을단위의 농사조합법인등을 통한 집락영농은 농업생산의 협업화를 통하여 내부효율화를 꾀하여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때 마을단위의 법인화를 통하여 농지의 공동생산활동을 추구하고 있으며 법인의 주요 형태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농사조합법인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널리 확대되고 있는 집락영농은 “ 마을 단위로 농업 생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동화·통일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실시되는 영농”이라고 정의하며 마을단위로 다수의 소규모 농가 및 겸업농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경영체를 의미한다(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또는 “단일 또는 몇 마을 정도의 지연적인 범위를 단위로 대부분의 농가의 참여와 그들 농가에서 출자와 노동제공, 농지 이용 조정 등에 합의에 따라 참여 농가의 경제적·비경제적인 효용(만족)의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집단적인 영농”이라고 정의한다(일본 농업·식품

산업 기술 종합 연구기구).

집락영농을 추진하면서 영세한 소농의 가족경영을 협업을 통한 조직적 활동으로 전환하여 조직체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대체하며 조직화를 통한 경제성을 발휘하고 지역의 자원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10> 일본 집락영농의 기대효과

국내에서도 근래에 ‘마을영농’/‘마을단위 농업경영체’라는 개념이 연구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초기연구 및 시범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⁰⁾ 이들 사업에서는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로 마을조직이 구성되었다. 향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많은 형태의 집락영농과 유사한 조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0) 경상북도에서는 ‘마을영농’시범사업을 2013년 추진중이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경영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마을단위 농업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55> 일본 집락영농의 사례 : 사코우토 팜

사코우토 팜(農業組合法人 酒人ふぁ～む)

일본 시가현의 사코우토 팜은 마을 주민이 농사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마을의 농지를 이용하여 집락영농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의 주민에 의해서 임원 및 조합장을 선출하며 임원 및 조합원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공동사업에 기여를 하고 경영이익에 대해서는 자체의 기준에 따라 임금 및 배당금으로 분배를 하고 있다.

- 법인 설립일 : 2002년 12월 13일
- 농업지역유형 : 평지농업지역
- 구성농가수 : 56호
- 출자금 : 448만엔
- 농산물 판매매출액: 34,754천엔(2011년 기준)
- 경영이익: 5344천엔(2011년 기준)
- 의결권: 1인 1표제
- 경영규모(ha)

수도작	소맥	대두	노지채소	하우스채소	총 재배면적
22.4	13.7	14.7	2.5	0.3	53.6

- 조합원의 성별 및 연령대별 역할분담 체계 구축
- 조합원의 대부분은 겸업농으로 평일에는 농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주말 및 휴일 등 조합원 여건에 맞춰 월 2회 의무 출역 실시
- 역할에 따른 차등적인 노임 지급
- -오퍼레이터: 1250엔/시간
- -여성 및 고령조합원: 700엔/시간
- 조합장은 3년 임기제
- 임원은 업무분장에 따른 역할분담



나. 집락영농과 일본의 정책방향

일본은 농지정책 및 농촌의 진흥정책상 대규모 인정농업자를 육성하는 방안과 함께 집락영농을 육성하고 마을내 주민의 협업적 생산법인을 통한 집락영농의 법인화와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쌀 정책 개혁시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락영농체를 인정농업자와 동일한 수전농업의 담당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2003)에서는 임의 집락영농 중 농지집적을 도모하는 집락영농을 특정농업단체로 인정하여 농지의 집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2005년 발표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서는 집락영농조직을 정책의 주 대상으로 인정하고 품목별 보조금의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다. 2010년에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집락영농의 법인화 및 6차산업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2.3. 일본농협(JA)와 소규모 협동조직의 연계

가. 일본농협(JA)의 집락영농등 소규모 생산법인 지원

일본의 농협(JA)도 새로운 지역농업의 전개 방안의 하나로 집락영농 마을법인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JA가 직접 출자하고 운영면에서도 참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주요한 역할로 법인의 저비용화를 지원하여 광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안정된 판매처를 제공해 준다. 가공업체와 직접적 관계 강화를 도모하거나, 직매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¹⁾

일본의 협동조합은 마을의 집락영농을 수행하는 농사조합법인을 육성

11) JA-IT통신 창간호(JA-IT研究會通信) (<http://ja-it.net/>)

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각 조합마다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사조합 법인과 같은 소규모 생산법인에 대하여 농협이 출자를 하고 법인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약정을 맺음으로써 사업적 연계관계를 가지게 된다.

일본농협은 농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마을단위 영농 및 법인지원과 영농주체의 조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황명철,2010). JA가 소규모 단위의 영농조직에 대하여 법인화 및 경영지원을 함과 동시에 사업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추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표 56> 농협의 농지활용 관련 직간접적 사업추진(황명철, 2010 재인용)

추진사업		실시 비율	실시 JA수	
JA에 의한 마을단위 영농 및 법인지원 과 영농주체의 조직화	마을단위 영농의 조직화	①마을단위 영농이 지역농업전략·논농업비전에서 명확한 위치를 지님	44.9	307
		②지역에 맞는 마을단위 영농모델을 확립, 방향과 실천방안을 마련	30.7	210
		③기계·시설의 공동이용을 권장	49.0	335
		④기계·시설의 임대사업을 실시	28.5	195
		⑤구획별 순환농업을 실시	35.2	241
		⑥영농조직의 작업수탁, 농지집적 추진	50.9	348
		⑦영농조직의 경리 일원화를 추진	42.5	291
		⑧영농조직의 법인화 추진	42.7	292
		⑨기장대행 등 회계지원을 실시	28.4	194
	JA로서 법인지원 방침 명확화	①법인설립 지원방침 확립	32.5	222
		②법인에 대한 사업을 통한 지원	29.4	201
		③경영관리 및 세무신고 지원	28.2	193
		④JA의 농업법인 출자방침 명확화	14.6	100
	대규모농가·법인을 포함하는 영농주체의 조직화	①인정농업인의 조직화	37.7	258
		②농업법인의 조직화	18.7	128
		③마을단위 영농·수탁조직 확립	38.0	260
		④논 농업 영농주체의 조직화	17.4	119
		⑤기타 영농주체의 조직화	11.4	78

일본농협은 생산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 중 하나로 출자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및 농협의 여건에 따라 출자비율은 상이하지만 출자를 통하여 이러한 법인들이 활성화 되는데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농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 농협의 판매 및 구매사업도 활성화 되는 측면에서 지역농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표 1> 마을조직체에 대한 농협의 지원사례 : JA그린 오우미

JA그린 오우미의 집락영농 연계사례

- JA 그린 오우미의 조합원은 2만명(농가: 9000명, 비농가: 11000명)이며 조합원의 경작면적은 시가현 1만3000ha 가운데 7800ha 규모임
- 시가현 집락영농의 경영규모는 평균 20ha 정도임
- 집락 영농조직에 대한 JA의 역할은 첫째, 호별소득보상추진사업의 신청 지원, 두 번째 집락영농 조직의 특정농업단체로서의 법인화 지원, 세 번째 채소 등 새로운 작물재배 시 기술보급 및 자재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조합원 130개 조직 가운데 35개 조직(경작면적: 1400ha 규모)을 특정농업단체로서 법인화하는데 지원했으며 이 중 34개 조직은 JA그린 오우미와 상호 출자관계에 있음
- 법인화 지원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나 출하약정 조건이 있음
- 상호 출자금액은 10만엔 내외며 상호 출자계약을 맺은 조합원의 90% 이상은 JA를 통한 출하를 하고 있음
- JA가 집락영농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농산물 조달처 확보에 있으며 JA지원을 받아 법인화를 완료한 뒤에 출하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조직이 있어 상호 출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됨
- 개별 농가의 경작 방치지를 집적해 대규모 영농 법인에 임대해 주는 형태로 농지집적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개별 농가 및 법인 양측으로부터 지대의 2% 수준을 수취
- 2012년에는 JA의 지원을 받아 법인화를 실시한 집락 영농조직간의 연합조직인 'JA출자법인연합협의회'를 구축했음
- 최소 20ha~최대 250ha 규모의 집락영농 조직간의 관계형성으로 대형농작업 기계의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조직 상호간 오피레이터의 기술지원, 재배기술 제공, 농작업 수탁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이 조직에 참여한 집락영농에 대해서는 출하 수수료 및 자재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

3. 농촌지역에서 가능한 협동조합의 유형

우리나라 농업 및 농촌분야에 나타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사업유형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농업생산유통분야의 협동조합이며, 둘째는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셋째는 농촌사회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이다. 이와 같은 분류는 협동조합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나뉜다. 그리고 유형별로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의 유형이 가능하다.¹²⁾

<표 57> 우리나라 농촌에서 실현가능한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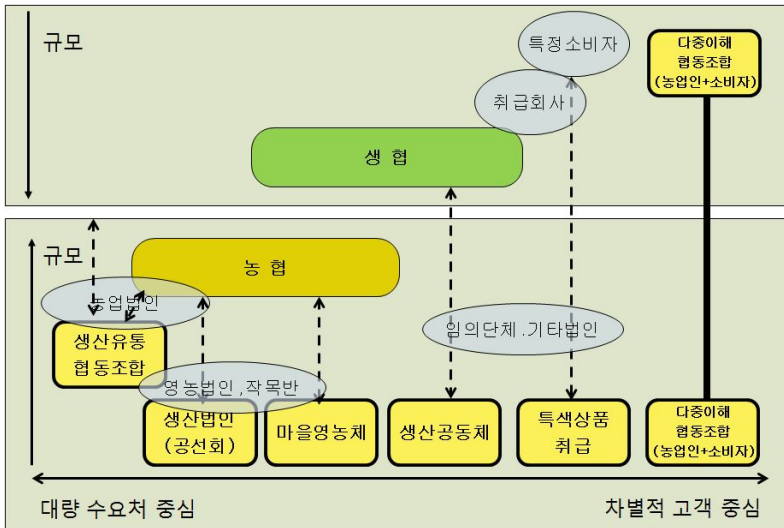
구분	사업의 목적	협동조합유형
농업생산유통분야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가공을 통하여 구성원의 경제적 편익 증대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농촌어메니티자원활용	농촌의 환경 및 자원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개발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창출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농촌사회서비스분야	농촌지역의 복지 및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다만 협동조합이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분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2) 김기태(2012b)는 신규협동조합 유형의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협동조합의 유형을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3.1. 농업생산유통분야 협동조합 모델

농업생산유통분야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시장에 따라 특성이 구분가능하다. 독자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역량을 갖추고 기존의 농업협동조합 및 유통사업을 주로 하는 농업법인과 같이 기존의 판매망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공동의 농업생산 및 경영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구성도 가능하다. 기존의 판매경로가 아닌 경우 특정한 상품을 중심으로 거래처를 개발하거나 직거래를 통한 특정소비처를 중심으로 생산지에서 협동조합이 구성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조합원내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포함될 수 있는 협동조합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11> 농업 생산·가공·유통 영역에서의 협동조합 모델

3.1.1. 일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 모델

가. 일반유통형 협동조합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인이 품목의 공동 생산, 유통, 가공 등의 목적을 가지고 협업적 경영을 추구하고자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이러한 목적의 협동조합중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설립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제시한 한계 때문에 협동조합의 단기적인 규모화를 통하여 농협과 기존의 유명법인수준의 사업역량을 단기간에 가지기는 힘들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내부역량을 축적하고 자본의 확보 및 사업의 확대가 실현된다면 현재의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사업규모의 협동조합들이 출현할 것이다.

나. 생산중심형 소규모 협동조합

반면 일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중 규모가 크지 않거나 독자적인 유통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될 수 있다. 공동생산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 이후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해서는 외부에 역할을 위임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농협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반대로 농협의 입장에서도 비법인의 형태로 생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바, 농업생산과 관련된 협동조합들을 중요한 출하자로 인식할 수 있다.

현재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공선출하회의 법인화 논의에서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광역화되고 규모화되고 있는 농협의 경제사업에서 공동판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생산조직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구성하는데 있어서 법인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의 작목반과 같이 농협이 유통 및 판매를 맡고 협동조합은 생산에 전념하여 경영 효율화와 농업인의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즉 현재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한 거래관계를 확립함으로써 부족한 유통 및 마케팅 역량을 농협과 함께 협력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의 생협이 직거래를 위하여 농촌지역의 생산자를 조직하고자 할 때 현재 비법인형태의 생산공동체를 협동조합형태의 생산법인으로 전환하여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 마을단위 생산공동체 협동조합

주요산지의 경우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드시 품목이 아닌 마을과 같은 지역을 단위로 농산물생산유통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을의 농가고령화에 따른 경작포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지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을 통한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단위의 농업생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의 집락영농과 같은 마을단위 생산공동체의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농업경영측면에서 공동체에 기반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그 중에서 효율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통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의 목적하는 바를 추구하고자 한다.

마을단위 생산공동체는 유희농지의 공동이용, 농지이용의 마을단위 협의 등의 형태를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에서 1970년대 이후 시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키부츠식의 '공동농장'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형태이다. 다만 농지의 개인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농지공동이용은 어려울 것이며 영농활동의 다양한 요소중에 효율화를 꾀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1.2. 차별적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 모델

가. 직거래 중심의 틈새시장 협동조합

기존의 생협과 같은 소비자조직이나 아파트 단지의 소비층과 거래하고 있던 생산조직이나 귀농자의 도시지역 인맥을 활용하여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 소규모 물량을 직거래로 취급하거나 지역농협이 직접 유통을 담당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적어 경합이 되지 않는 특수작목의 생산과 가공을 통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직거래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특색 있는 작목의 경우 생산자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의 조합원간 공유 및 교육을 통한 공동의 연구를 통해 재배농가의 사업에 실익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다중이해 협동조합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만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다른 종의 협동조합 조합원을 둘 수 있다. 실제로 스페인 몬드라곤의 유통그룹인 에로스키는 몬드라곤의 협동조합유형인 노동자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의 성격을 혼합한 새로운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생산자 농업인과 도시의 소비자 조합원이 동시에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소비자 직거래 등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3.2.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용 분야 협동조합 모델

3.2.1. 농촌관광의 활성화와 협동조합

농산물의 생산 이외에 가공과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내부화 하는 것 이외에도 농촌의 지역재생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어메니티의 활용은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농촌관광마을 육성을 둘러싼 지원정책이 있었으며, 주로 마을 단위 혹은 법정리 2~3개 단위로 정책 대상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농촌관광 관련 사업들은 1) 해당 대상 범위의 협소함으로 인해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재방문 유인이 부족한 측면과 함께, 2) 농촌관광 추진체의 법인격이 시도되었지만 충분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못했고, 3) 추진주체의 인적 및 자원동원 측면에서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보다 비슷한 관광프로그램이 확산되어 도시민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특히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창출 여부는 지역사회 역량과 주민 참여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상향식 접근방법의 특징이 있는데 실제 실행과정에서 기대만큼 충분히 실천되지 못하고 주민의 주도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나타난다(김정섭 외, 2011).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사업이용을 전제로 하는 협동조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은 농촌관광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규모 네트워크형 리조트의, 케이블카의 운영 등 더 다양한 방법들이 찾아질 수 있으며, 농촌개발도 현재의 2~3개 법정리를 넘어서서 읍면단위 혹은 생활권 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13)

농촌의 자연환경과 연결된 교육협동조합 등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 금번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춘천별빛산골유학협동조합’은 농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이다.¹⁴⁾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의 협동조합법인격의 취득과 읍면단위 농촌개발 협동조합의 설립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영역과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공통점이라면 마을단위 협동조합과 읍면단위 이상의 협동조합은 생산가공유통 영역의 생산조직 및 농협의 판매마케팅 사업의 관계와 비유될 수 있다. 즉 마을단위의 서비스는 개별 농촌관광협동조합이 담당하되, 전체적인 고객관리나 정보의 유통, 마케팅 수행 등은 상급의 연합회가 수행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마을단위 지도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마을사무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차이점은 생산가공유통의 마케팅 역할분담이 이미 존재하는 농협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농촌관광에서는 이런 경합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첫째, 농촌지역활성화 사업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 지역주민의 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측면에서 농협이 농촌지역 협동조합을 포괄하기 어렵다. 둘째, 기존 농협은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며 자신의 사업으로 참여한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이며, 현재 농협의 운영구조상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성과를 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13) 다양한 범위를 중첩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본법에서 연합회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더 확대될 수 있다. 기본법에서는 연합회를 동종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3개 협동조합 이상이 참여하면 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었다. 현재의 마을단위 농촌관광의 법인체들이 연합하여 읍면단위 혹은 더 광역의 업종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미 전북 진안군에서는 개별 마을관광을 넘어서 시군단위의 조율과 공동 홍보 등을 위한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다.

14) 도시아이들의 산촌유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며, 조합원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읍면단위 지역개발 사업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농협도 있다. 이런 경우 초기 의사결정구조의 정비, 역할분담과 역량의 강화, 성과배분 등 협동조합적 합의구조를 제대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기업의 CSR활동과 이를 연계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 기업이 지역의 이 활동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만드는 역할도 중요시 된다.

3.3. 농촌 사회서비스분야 협동조합 모델

3.3.1. 농촌사회서비스의 주체로서 협동조합

농촌의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의 영역에 속하고 실현된 사례들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중요한 영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국의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이나 비농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대부분 복지와 사회서비스를 협동조합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니즈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영역도 이 부분이다.

몇 가지 사업모델의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기존 중앙부처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부처별, 부서별, 정책별로 개별적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기 십상이다. 하지만 도시지역은 복지정책의 대상이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정책별 전달체계가 분산되더라도 최종 복지수혜자층에게 전달되는데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데 비해, 농촌지역은 인구의 과소화와 마을의 분산성으로 인해 복지전달체계의 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하여 실제 복지정책대상이 서비스를 향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지역의 분산성을 다양한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

하는 농촌의 지역복합복지전달 체계의 집중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적 구성을 필요로 한다. 지역종합복지협동조합의 설립은 읍면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종합복지협동조합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탁하는 업무가 주사업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이 40% 이상이므로, 그 외 별도의 자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경영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의 Missing Market을 발굴하여 요구를 사업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 복지수행 담당자의 파견에 따라 정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동취사의 사업적 개발이나, 고령자 조합원에 대한 농협선별장 인력파견 등과 같은 발굴사업도 추가할 수 있다.

농협 등 다양한 지역활동을 통한 지역의료협동조합의 설립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이들 협동조합은 기존의 농협의 교육지원사업의 비용으로만 간주되었던 사업들을 아웃소싱하고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농협의 사업범위라고 간주하지 않았으므로 농협과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데 가장 수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농협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사례, 농협이 복지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혜택이 지역민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서포항농협의 청초롬유통지원센터는 지역민중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농협의 선별작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서포항농협은 농협에서 수행하는 농산물판매사업에서 발생하는 노동투입을 취약계층 및 지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용자에게 소득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농협이 사업의 일부를 아웃소싱하여 별도의 지역공헌사업을 실시하는 것 자체를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수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58> 농협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 : 서포항농협

< 서포항농협의 커뮤니티비즈니스 >

서포항농협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고용인력을 사회직기업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도모하고 농협의 조합원에게도 전문인력 운영을 통한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포항농협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2008년 이전부터 농협이 조합원을 중심으로 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 봉사단체로만 운영되기에는 조직의 규모가 작고 전문적인 일을 맡아하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서포항농협은 2008년 청초롬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서포항농협은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산물의 선별 및 포장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의 경우 보통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를 서포항농협에서는 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농협이 이러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직접고용하기가 어렵고 고용노동부의 정책제도의 지원을 받기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 설립한 법인이 청초롬유통지원센터이며 독립된 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농협은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운영을 아웃소싱형태로 청초롬유통지원센터에 맡김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운영을 위한 사무실 및 사무기기 등을 농협과 공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초롬유통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청초롬유통지원센터는 지역주민 1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취약계층은 7명으로 저소득자 2명, 고령자 2명, 장애인 1명, 결혼이민자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일반 지역민 고용자로 4명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장기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4대보험 등의 혜택 등 일용직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다.

청초롬유통지원센터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자들에게 공헌하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서포항농협은 기존의 선별인력을 전문화된 고정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음으로써 인건비를 적게 지출함으로써 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농가의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정식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서포항농협의 유통센터의 인력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서포항농협(당시 기계농협)과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도에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었다.



3.3.2. 사회적협동조합 제도의 활용

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비영리법인(제4조)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제8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중 농촌지역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이의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낙후된 중산간지 이상의 모든 활동이 지역사회 재생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재생 이외에도 농어촌사회의 사회서비스, 복지정책, 고령농업인의 고용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관할영역이므로 이후 농촌지역 협동조합 설립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행령에서 “협동조합의 인가를 중앙부처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농식품부가 농어촌의 재생과 관련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권을 위탁받을 수 있으므로 인가의 원칙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표 59> 농협의 사회적 기여 사례 : 고삼농협

< 사례: 안성 고삼농협과 지역생산공동체 >

안성시 고삼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주력 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농업인력의 진입이 거의 없어 농촌마을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이 지역의 생산조직화를 통해 2004년부터 당시 확장되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농협의 지원을 통해 2006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혁신하여 농가생산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도입하고, 저소득 조합원 빈식우 분양 등 노령농가에게 적합한 사업과 체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용하였으며, 2008년에는 일자리 사업단을 분리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재출범했다. 고삼농협은 2008년 4월 당시까지 조합 내부 영농지원조직이었던 ‘고삼농협 생명농업지원센터’를 농협에서 분리했다.

2009년 법인격을 획득하여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인 ‘(유)생명농업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3.3.3. 귀농인들의 협동조합

근래에 들어와 농촌으로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주하는 인구의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한 와중에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적응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귀농인끼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또는 지역의 기존마을의 귀농한 사람들의 귀농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주합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활동을 지속하고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기가 수월하다.

특히 농촌지역사람이 아닌 경우 외지인이 농지를 빌리는 경우에 어려움이 많은데,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직접 농지를 임차하는 것이 아닌 공동영농에 참여하면서 농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구성에서 기존의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젊은이가 참여하는데 있어 마을에서 부족한 전문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귀농귀촌을 위한 정비작업을 위한 농지의 공동소유와 연계한 트러스트 방식의 협동조합과 같은 귀농귀촌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도 가능하다.

3.4. 유형별 협동조합의 연결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의 새로운 농촌지역 협동조합은 실제 실행과정에 서는 상호 연결될 수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의 조합원들에게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로 사업이 확장될 수도 있고, 지역관광 협동조합의 단골 고객들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역시 직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반대로 꾸러미사업으로 시작한 도농연계 협동조합이 지역관광 협동조합을 확대될 수도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소속된 고령농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취약계층의 고용통합 사업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저해요인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채택하는 방식에 따라 더욱 다양한 협동조합으로 분화하고 사업들이 융합되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크게 3가지 이념형으로 구분한 것은 판단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협동조합은 가급적 조합원이 균질적이어야 성공한다는 점에서 개별 협동조합의 사업확장보다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나타나고 이들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4. 지역사회의 협동조합간 협력관계

4.1. 농협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협력

농협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기반으로 탄생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지역 협동조합과 어떤 경우에는 경합관계가 예상되고, 어떤 경우에는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농협은 농촌지역에서 가장 많은 자산과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섹터의 최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새로운 협동조합과 최대한 협력적인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협력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크게 네 가지의 역할이 요구된다.

4.1.1. 초기자본 형성의 지원

조합원의 가입을 통한 초기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농협과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구성방식에 대해 협동조합 정체성에 입각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인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초기 자본의 형성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의 이용과 연동시킨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안성의료생협의 경우는 초기 농협의 협력적 역할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성의료생협이 설립되는 초기에 고삼농협은 농협자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안성의료생협의 초창기 설립에 기여하였다. 당시 농협의 조합원은 의료생협의 사업을 이용하였으며 사업이용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이런 초기 참여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으며, 다른 중앙부처와 연계된 협동조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화된 여건에 대해 초기에 농협과 관계 맺는데 농협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는 물론, 지자체, 정부부처와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4.1.2. 협동조합금융의 협력

협동조합의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과 운용자금의 입출금, 지역단위 협동조합육성기금 등의 이슈와 관련된 협동조합금융의 문제이다. 초기 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수적인 이런 금융부문은 단순히 운영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 컨설팅의 영역까지 포괄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의 기존 대출관행이나 대출처 관리방식은 IMF 이후 신용보증 중심으로 굳어져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적극적인 협동조합지원이라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며 담당 전문직원을 육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 금융 기능에서 농협의 역할이 미흡할 경우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을 수행하는 다른 협동조합금융기관이 이를 전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시는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농촌지역에서 농협과 별도의 협동조합금융기관으로 시스템이 짜여질 경우 이용의 불편 등 우리나라 협동조합섹터의 현황을 감안한 최적화된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4.1.3. 협동조합의 역량강화 지원

협동조합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다양한 실무적인 경험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농협의 협동조합 운용은 50년을 경과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농협 내부에서는 이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자동화된 제도라 하더라도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

이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하나하나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문제들로 다가 올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여건이 상당히 다른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협동조합의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실무매뉴얼로 전달하고, 현장에서 직접 작은 새로운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농협의 지도담당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협동조합과의 관계 형성이란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농협의 재창조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4.1.4. 사업기능의 지원

새로운 협동조합 중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생산법인들의 일반 유통채널에 대한 판매처로 작용해 주는 것이다. 농협이 그동안 확보하고 있는 매장의 수나 소매유통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판로를 담당해 주는데 초기 투자와 마케팅 업무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 이 부분도 적절한 기술적 지도나 컨설팅이 동반되어야 하며, 농협과 거래하는 업무정비가 필요하다. 농촌지역 농협은 로컬푸드를 추구하는 지역 먹거리 순환을 고민할 수 있지만 다수의 소비자 농협매장과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가 운영하게 될 매장, 혹은 소비자협동조합의 물류를 대행해 주는 도매물류사업단의 경우 소비자의 소비자 유통정보나 동향, 요구수준 등의 전문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에 맞게 생산가공을 조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네 가지 역할이 모두다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면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농협과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농촌지역의 재생은 원래 농촌지역이 가지는 잠재력에 비해 뒤쳐질 것이다.

제4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정책 및 법제도 정비의 기본방향

1.1. 정부의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기본원칙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회의(2013)자료에 의하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부처에서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둘째,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정책지원, 셋째,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이다.



<그림 12> 협동조합 정책의 기본방향(기획재정부,2012)

이에 발맞추어 농림축산부도 기존의 농업 농촌관련 정책에서 협동조합이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조정하고, 추가적 정책지원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민간의 경제조직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설립되었거나 향후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협동조합이 스스로 발전하고 성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 및 법을 정비하고, 다른 경제조직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 및 제도상 개정할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니는 운영원리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활용할 부분을 탐색해 보았다. 향후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3> 협동조합 법·제도 정비의 기본방향

1.2. 법·제도 개선의 핵심 전략

1.2.1. 농업 및 농촌관련 사업의 정책대상화

가. 협동조합의 정책대상화 필요성

현재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전망 및 향후 협동조합의 농촌지역에서의 운영모델을 확산하는 측면에서 농림사업의 정책대상으로 협동조합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의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영농조합법인 등에 비해 공익적 성격이 높으므로 농식품부의 정책 대상에 일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정책대상화의 추진목표

협동조합이 기존의 법인에 비하여 역차별적으로 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의 법적 정책 제도적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농정정책의 대상 중 하나로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자 할 때,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포함하는 방법과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정책대상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정책대상화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관련 법 및 제도적 개선사항에서 검토할 부

분들에 대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 외에 고려해 볼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또한 기존의 농촌지역의 법인체 중에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조직은 그 설립목적과 운영이 협동조합과 유사한 만큼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에 따라 근거규정상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밖에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2.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타법률 및 정책 정비

농업 및 농촌관련 협동조합의 활성화 필요성이 있으며 소관부처에서는 법제도개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농촌지역에서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의 모델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정책사업의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 외에 농업분야 및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1.2.3. 주요사업별 협동조합의 활용방법의 탐색

농업 및 농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활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 재정리하고 각 사업별로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1.3. 관련 법제도 개선의 원칙

1.3.1.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를 반영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거나 다른 대상과 차별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협동조합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독립 조직으로써 그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기존에 정부에서 농업농촌분야에 지원하는 직접적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가능한 부분은 기존의 조직과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한다.

1.3.2. 법률간 적용구조를 고려 법리적 합리성 반영

‘협동조합기본법’은 법인격을 정하는 법으로써 민법, 상법등과 같이 기본적인 법인의 설립요건 및 운영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본다. 농업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은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민법, 상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그 하위의 특별법으로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등과 같은 개별법으로 된 협동조합법은 각 법률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법과 관련한 제도개정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법률간 위계를 감안하도록 한다.

2. 농촌 조직관련 지원정책 및 법적제도

2.1. 농업정책에서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2.1.1. 농업 정책의 대상 법인과 근거법률

농림사업에서의 주요한 사업대상으로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기타 법인이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이법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생산자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산자단체는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대통령령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하며 시행령 상에서 5인 이상의 생산자조직을 정의하고 있는바¹⁵⁾ 현재의 농업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15) 시행령에서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적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표 60> 농림사업의 주요정책사업 대상

농림사업의 대상		설립근거법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업회사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연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연초협동조합법
	농업인 5인이상의 전문생산자조직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 등의 공동조직			
일반법인		상법 및 민법 등	

2.2. 농림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가능성 검토

2.2.1.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사업대상

2013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사업의 내용 중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 농협 등 법인을 포함하고 개인, 지자체의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추출하여 정리를 실시하였다. 사업의 규모 및 시행과정상 협동조합이 해당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하였다.

<표 61> 농림사업시행지침과 사업대상 현황

분야	사업명	현재사업대상	연계조건
식량 분야	농지장기임대차 사업	임대 대상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 법인 등	사업대상추가 (농지법 개정필 요)
	들녘별경영체육 성사업	정부인정 미곡종합처리장(RPC)·건 조저장시설(DSC) 사업자, 농협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 인)	사업대상추가
원예 식품 분야	농산물 규격출 하사업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	사업대상추가 (규모화필요)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산지유통종합 자금)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 단	사업대상추가 (규모화필요)
	원예농산물 지 운유통체계 구 축사업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 업체, 학교급식시범사업자(농식품부 지정)	사업대상추가 (규모화필요)
	인삼·약용작물 계열화사업	농협, 일반업체 계약재배 참여농가	가능
	인삼생산·유통 시설현대화사업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 는 사업법인	가능
	기능성 양잠산 물종합단지조성 사업	양잠농협, 양잠산물 생산자단체(농 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사업대상추가
	소비자유통활성 화사업	-직거래 매취지원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 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소비 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대상추가
	농산물브랜드육 성지원사업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수요업 체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 법인체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 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사	가능 (규모화필요)
	시설원예품질개 선사업 <원예전문생산 단지>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 업인·농업법인	사업대상추가
	침단온실 신축	농업인·농업법인	사업대상추가

분야	사업명	현재사업대상	연계조건
	지원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어업인 (법인 포함)	사업대상추가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국내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사업대상추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수출농협, 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사업대상추가
	식품외식종합자급사업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	가능
	외식산업육성사업(전문인력양성)	외식관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가능
	친일업산업육성지원사업	공기업, 친일업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개인(친일업 생산자)	사업대상추가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김치사업자 비영리법인 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에 의거 자조금을 조성한 사업자 (자조금 조성 필요)	자조금단체지위 획득시 가능
	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공동법인 업무 협약 체결 연합체 식품기업 클러스터 농공상융합형기업 간 연합체 중소식품기업 협동조합	연합체시 가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산지유통업체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업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등	가능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사업대상추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사업대상추가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가능 (요건충족필요)
산림분야	과원영농규모화사업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사업대상추가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사업대상추가
	산림소득증대사	품목재배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사업대상추가

154 제4장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법 및 제도 개선

분야	사업명	현재사업대상	연계조건
	업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32개 시·군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가능 (지역한정)
	임산물 수출 사업	임산물수출업체, 생산자, 단체 등	가능
농 촌 개 발 분 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사업대상추가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사업대상추가
	신기술보급사업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사업대상추가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다수의 농어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 구성·운영하는 조직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조직화된 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시군유통회사, 마을단위 농업법인(색깔있는 마을 등), 농어촌공동체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사업대상추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사업대상추가
	농어촌관광휴양 자원개발 사업	제한없음	가능
소 원 발 생 환 경 개 선	농어촌관광휴양 자원개발 사업(관광농원)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	사업대상추가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지방공기업, 마을정비조합 등	사업대상추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	사업대상추가
축 산	축산분뇨처리 시설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공동자원화시설: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법인)	사업대상추가
	말산업 육성사업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	사업대상추가

분야	사업명	현재사업대상	연계조건
	업	법상 법인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사업대상추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가능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한우사업단, 브랜드운영주체, 영농조합 등	사업대상추가 (규모화필요)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축산계열화)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	
	중축장전문화지원 사업	중축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광 회 계 특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사업대상추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117개시장·군수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 (농업법인 우선)	가능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사단법인 권장)	사업대상추가 (사단법인 대체)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사업대상추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대상추가

2.2.2.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포함 방법

전체 사업 중 상당수가 법인이체가 수행 가능한 사업이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에 따라 특정 법인형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 법인의 형태로 제한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특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법인 형태를 지정한 경우 현재 농림사업시행지침상 상당수의 사

업에서 ‘농업법인’을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포함할 경우 많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 사업에서 협동조합을 지정하여 사업대상자로 포함하는 방법보다 관련규정의 변경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생산자 단체로 농협이나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 협동조합을 생산자 단체로 포함하는 방법을 통해 협동조합을 사업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다.

2.2.3. 농림사업지원상 농업법인의 기초요건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는 농수산법인에 대하여 보칙으로 지원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표 62>와 같은 요건을 구비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통 요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 62> 농림사업시행지침 실시규정

<p>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p> <p>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p> <p>-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를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p> <p>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p> <p><u>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족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u></p> <p>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개정 2010. 12. ></p> <p>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p>
--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다. 재무제표 정구<신설2006.12. >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농업인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의 구성원 중에서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협동조합이 사업시행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에 준용하여 관련 요건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동조합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동의 사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3. 주요 농업농촌 관련정책과 협동조합의 관련성

2.3.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정책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공동체 회사에 대하여 발전가능성이 큰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품·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체회사 역량강화교육, 경영전략 컨설팅, 홍보,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2년의 경우 농어촌공동체회사 54개소에 대하여 1,350백만원의 지원이 되었다.

농어촌공동체 회사의 법인 형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법인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농어촌공동체 회사의 법인격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농어촌공동체 회사의 상당수가 지역에서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2.3.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기존의 기초생활환경 개선위주의 지역개발방식을 전환하여 새로운 지역개발패러다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지역 중 마을간 연계를 이룰 수 있는 권역주민이 주도로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주도의 하향식 지역개발사업을 탈피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하여, 기초기반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농촌 활성화 방향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수급주체가 되는 것은 마을주민으로 이루어진 법인으로 그동안 영농조합법인, 사단법인과 같은 형태의 다양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인의 형태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 및 이익의 배분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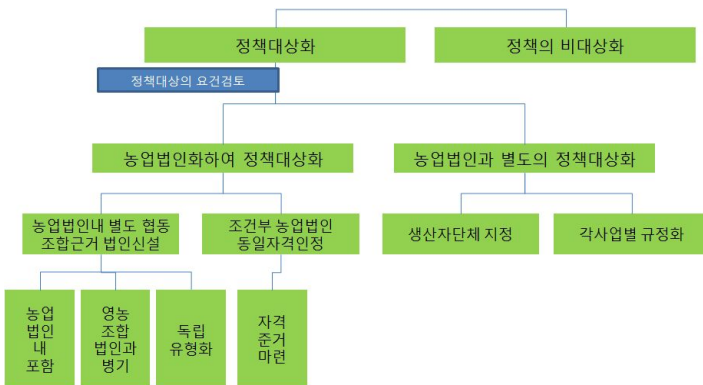
3.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정책 대상화 방안 검토

3.1. 정책대상화를 위한 협동조합 법인의 자격부여

3.1.1. 농림사업의 정책대상화를 위한 선택안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 농업경영과 관련한 협동조합들을 기존의 농협이나 농업법인과 같이 정책대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대상화를 위한 요건의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사업의 정책대상화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세부적 기준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 협동조합이 정책대상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가정아래에서 이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책대상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림 14> 협동조합정책대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법모색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이 농업의 경영 및 유통 및 부대사업인 경우 농업의 유지 및 발전의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기존의 다른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시행 지침이나 법률상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종류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이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법인격을 통칭하는 말로 그 자체로는 농업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업인 조합원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한다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의 농업법인은 기존의 상법과 민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별도의 법인체를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협동조합을 정책사업의 대상으로 단순히 추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을 종합적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표 63> 정책대상화의 방법 및 추진방안 요약

	농업법인의 형태로 특별법인설정		생산자단체 범위에 협동조합 추가	각 사업별 협동조합 대상화	제도개선사항
	영농조합법 인에 추가	농업회사법 인에추가			
1안	○	○	○	○	농업법인기준에 따라 일괄설정
2안	○		○	○	
3안		○	○	○	
4안			○	○	생산자단체기준에 따라 일괄설정
5안				○	사업별자격설정
	농어업경영체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정부고시 변경사항	시행지침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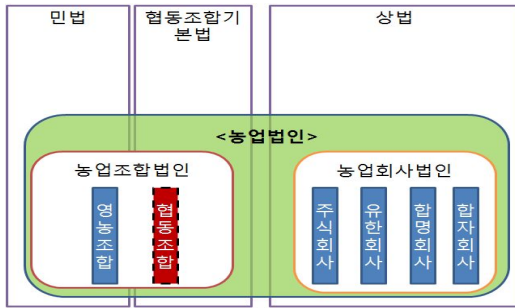
가. 농업법인중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하는 신규 유형의 도입

협업적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조합과 목적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단순히 협동조합을 추가하거나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농업경영체에 대한 구성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다. 기존의 농업회사법인의 유형이 아닌 협동조합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체를 규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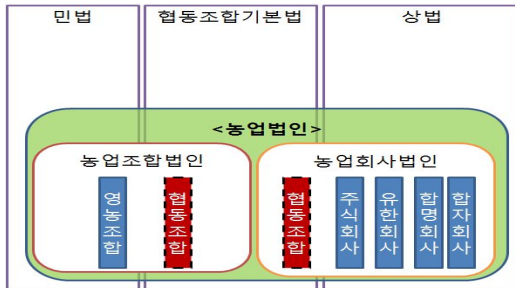
농업회사법인에서 상법에 근거한 여러 개의 법인을 그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정의하고 '농업회사법인 00 주식회사'와 같이 명칭을 사용하듯이 기존의 영농조합법인도 '(가칭)농업조합법인 00 영농조합'으로 부를 수 있다.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농업인으로만 구성되고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농업조합법인 00협동조합'은 비농업인이 참여가능하고 농업관련 다양한 사업을 수행가능하지만 상법상 회사와 달리 협동조합기본법의 설립 및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특징을 가지도록 규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조합법인(가칭)의 경우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협동조합유형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준용하게 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 그동안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이 제시되었지만 그 운영 및 설립에 있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규정과 유사점이 많다. 따라서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준용규정을 제정의 하고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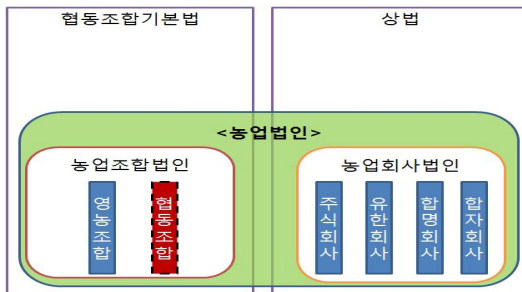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려면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상 명칭을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기존 설립된 협동조합들 중 필요한 경우 다시 농업법인에 의한 법인요건을 거쳐 신규설립을 하거나 법적 제도신설에 따른 전환을 하여야 한다.



<그림 15> 농업조합법인의 한 유형으로 포함 안



<그림 16> 농업법인의 한 유형으로 포함(안)



<그림 17> 영농조합법정도 기본법에 근거하도록 하는 방안

나. 농업회사법인의 기존 유형으로 포함

‘농업회사법인 00협동조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자체가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협동조합이 합자·합명·유한·주식회사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다. 농업회사법인의 준용규정에서 별도로 협동조합을 제시할 수 있지만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 속에 협동조합이 포함되기에는 법인의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을 농업회사법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기본법으로 설립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다시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하거나 관련법 정비를 통해서 전환을 통한 설립이 가능하다.



<그림 18>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로 협동조합 포함방안

다. 농업법인의 세 번째 별도 유형으로 정의

농업법인은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최대한 변경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가칭)농업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과 차이점은 참여자의 경우 농업인의 조합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농업인의 최소참여 기준을 충족시키며 기타 설립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사항을 따른다는 점이다. 위에서 제시한 형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협동조합은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림 19> 농업법인의 협동조합형태 신설방안

라. 농업법인에 준하는 법적자격 부여 (별도 법인격 미부여)

협동조합기본법을 준용한 별도의 협동조합과 관련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조항을 제정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기존의 농업법인과 동등한 수준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기존의 설립된 관련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협동조합을 정의할 수가 있다. 설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명칭을 별도로 두지 않아 기존의 협동조합들도 농

업법인과 동일한 자격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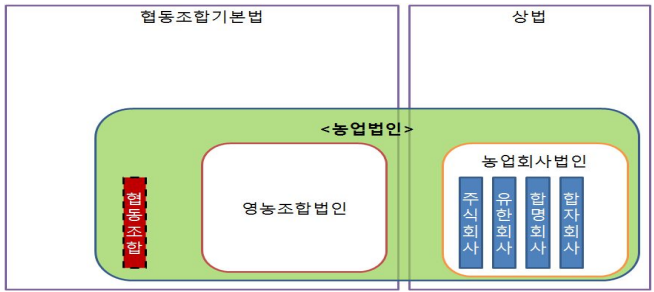
이 경우 협동조합을 기존의 농업법인의 형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이를 확인하고 농업법인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별도의 법인이 아닌 기존의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의 자격을 획득할 시에는 그 요건을 정하기 어렵고 현재 관련법에서 농업법인의 설립규정과 정관들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법인과 유사한 정책대상화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그림 20> 개별적 조건으로 협동조합을 동일 수준인정

또는 장기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근거하고 있는 법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농업법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농업생산분야의 협동조합으로 위치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있다.



<그림 21> 협동조합기본법 근거 영농조합 추가 방안

마. 생산자단체 지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어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생산자단체등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사업의 특정 대상으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사업별로 생산자단체 지정의 근거로 사업의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지정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생산자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정받아야 한다. 현재 생산자단체의 범위에는 개별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업연초생산자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장관 고시상의 전문생산자조직 등이 해당된다. 일정 조건이상의 농업법인의 경우 전문생산자조직에 해당하여 현재 생산자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표 64> 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외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시를 통하여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생산자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해당 단체로 명시되거나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를 통하여 생산자 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4조에 포함되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사업의 영역이 제한적이지 않고 조합원의 자격이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바 별도의 조건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자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5항에서 제시하는 전문생산자조직의 일부유형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⁶⁾

16)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2012)’에 의하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상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65> 생산자단체의 범위 (고시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중 농어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 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염업조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 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할 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74호	

농업법인의 특정법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농업법인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농업법인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단체에 포함되면 된다. 반면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고시장의 규정 및 자격제한을 두어 해당하는 협동조합에만 생산자단체를 지정 할 수 있다.

<표 66> 생산자 단체의 지정방법

구분	생산자단체의 지정방법
농업법인의 특정법인 제도 도입시	농업법인의 범주에 포함
	협동조합중 일정요건 충족시 포함
농업법인의 특정법인 제도 미도입시	협동조합중 일정요건 충족시 포함

바. 세부 정책사업별 지원대상에 포함

위에서 고려된 방법은 농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형태 방법, 또는 생산자단체로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만약 이와 같이 기존의 사업대상자에 일괄적으로 포함하여 정책대상화 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세부 사업별로 요건이 되는 협동조합에 사업을 줄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포함하여 사업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각각의 지원대상이 되는 협동조합의 세부요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농업법인 정책대상화를 위한 기본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적시하고 제시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가져야 하는 점, 일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의 단점이 있다. 또한 농업관련 사업 및 경영체로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종 정부의 정책사업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제약이 예상된다.

3.2.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설립시 주요사항 예시

앞에서 논의한 방안 중 '농업법인 협동조합'에 대하여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피할 경우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다. 이때 '농업법인 협동조합'은 '농업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의 유형으로 한다고 가정한다. 그 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제시해야 하므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다.

3.2.1. 기본요건 및 주요사항

가. 설립요건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으로만 조합원이 구성되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 중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10%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는 설립요건이 있다.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경우 이를 준용하되 유형별로 농업인으로만 구성할지, 또는 일반인을 포함할지에 따라서 그 차이를 둔다.

기본적으로 농업법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협동조합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의 기본사항에 기존 특별법상의 농업법인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농업인 참여인원의 경우 생산자단체로 인정하는 농업인의 수를 5명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농업법인의 협동조합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최소요건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비농업인이 참여하는

17) 농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참고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농업조합법인 협동조합은 영농조합법인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만 구성되며, 일반인은 의결권 없이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정에 '1인당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0%를 초과 못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므로 기존의 영농조합법인과 차이점이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무한책임, 농업조합법인 협동조합은 유한책임의 특징을 가진다.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건에 농업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대신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농업회사법인과 같이 농업인이 전체출자금에서 일정비율을 차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농업회사법인과와의 차이는 1인 1표의 협동조합 운영규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¹⁸⁾.

<표 67> 기존 농업법인의 설립요건 및 특징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수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결원 시, 1년 이내에 총원 (비총원 시 해산 사유)	합명(무한 2인), 합자 유 무한 각 1인) 유한(유한2-50인), 주식(1인)
출자제한	없음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설립자격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인, 생산자단체

18)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상법상의 회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회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

<표 68>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설립요건 및 특징(안)

구 분	농업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발기인수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5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제한	1인당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1인당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설립자격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인, 생산자단체, 일반인

나. 사업의 범위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그 사업은 기존의 농업법인과 유사하다. 다만 기존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을 주로 한다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은 그 사업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어 농업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도 유통, 가공, 문화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그 영역이 다양할 것이다. 농업조합법인 협동조합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은 농업회사법인의 회사들의 사업을 따르도록 한다.

다만 농업법인으로 협동조합을 정의할 때 농업관련 사업만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비농업인의 부당이득이나 농산업과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혜택에 관련하여 농업관련 사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협동조합에서 비농업인의 참여나 농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으로 복합화 하는 취지에서는 기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표 69> 농업법인의 사업분류와 협동조합의 구분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3.2.2. 설립을 위한 규정 및 법률변경(안)

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농업법인으로 협동조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근거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7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기존법률	개정검토사항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p>- 명칭의 재정의 및 변경</p>

<p>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p>	<p>‘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의 설립규정 추가</p>
<p>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p> <p>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p> <p>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p> <p>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의 ‘협동조합기본법’ 준용 규정</p>
<p>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p>	

나.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정관(예)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정관은 기존의 농업법인의 정관(예)와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의 정관(예)를 참고하여 제정하도록 한다. 협동조합의 정관(예)중에서는 사업자협동조합 정관례를 참고하도록 한다.¹⁹⁾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유한회사 등은 상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과 같이 농업법인 협동조합도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차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관(안)을 작성하였다.

1)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명칭

<표 71>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정관례 사항 : 명칭

정관례	비고
<p><농업조합법인 협동조합></p> <p>제1조(명칭) 본 협동조합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그 명칭은 농업조합법인○○협동조합이라 한다. 명칭은 반드시 「농업조합법인○○협동조합」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영농조합법인></p> <p>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명칭 중에는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p><협동조합기본법></p> <p>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p>
<p><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p> <p>제1조(명칭) 본 협동조합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이라 한다. 명칭은 반드시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p><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p> <p>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 칭한다. 상호는 반드시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19)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서는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협동조합 정관례’, ‘사업자협동조합 정관례’,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로 구분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을 일반 생산자(사업자)로 간주한다.

2)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목적

<표 72>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정관례 사항 : 목적

정관례	비고
<p><농업조합법인 협동조합> 제2조(목적) 본 협동조합은 협업적 농업경영활동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영농조합법인>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조합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p>
<p><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제2조(목적) 본 협동조합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협동조합기본법>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3.3.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정책대상화시 관련법 개정의 검토

협동조합을 농업법인을 통한 특정법인으로 지정하고 정책대상화 추진 시 관련된 법상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검토될 부분이 있다. 또한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 중에서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와 같은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73> 정책대상화시 검토대상 관련법

목적	관련법
생산자단체지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의 소유 허가	농지법
조세 및 지원특례 부여	조세 및 특례제한법
기타 관련 정책사업의 대상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인삼산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3.3.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생산자단체 포함

가. 농업법인의 특별법인 협동조합의 포함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협동조합을 포함할 경우 현재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농업법인으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관련된 규정도 함께 개정 고시할 필요가 있다.

나. 일반 협동조합의 생산자단체 포함

일반 협동조합 중 생산자단체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별도의 항목으로 협동조합을 규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법인의 수준과 유사한 자격조건을 갖추며 농업인이 포함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을 생산자단체에 넣을 수 있다.

<표 74> 협동조합의 생산자단체 포함방안

현행	개정(안)
<p>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중 농어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임업조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 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 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p>자료: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74호</p>	<p>(농업법인 포함 협동조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중 농어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p>(일반 협동조합)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 농업인이 5인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3.3.2. 농지법상의 농지소유의 허가

가. 농업법인 포함에 따른 농지소유에 관한 농지법 개정사항

농림사업중 농지의 소유와 관련된 사업 등에서는 농지소유가 금지된 법인이 참여할 수 없다. 현재 국내법상 농지의 소유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인, 농업법인 외에 농지소유를 금하고 있다. 농지법 2조에 의하면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 설립되어 있는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농지소유가 불가능하다.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협동조합이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하여 협동조합을 농지소유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농지소유의 대상으로 본다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와 같이 농업인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 다른법인(공익법인, 상법상법인 등)과 같이 농지소유가 규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농지법 등에서 협동조합에 대하여 농지소유의 허용범위 등을 별도로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농업법인상에 규정되는 협동조합이 농지소유가 허용하게 하다면 농업인의 참여여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농업인으로만 구성된 '농업조합법인 협동조합'의 경우와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중 업무집행권을 가진 등기이사중 1/3 이상이 농업인인 경우의 조건하에 관련 규정상 소유가 허용될 수 있다. 농지법 제2조의 3항에 농업법인 협동조합의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표 75> 협동조합의 농업법인포함에 따른 농지법 개정검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중략)

③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나. 일반 협동조합의 농지소유

농업법인의 형태로 특별법인화 되지 않는 경우 일반 협동조합에 대하여 농지소유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지만 농업법인과 같이 사업

및 구성원에 대하여 철저히 세부규정과 별도의 정관,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소유를 허가하기 어려우며, 세부 별도의 항목으로 관련 조건을 조성한다고 하여도 다른 일반 상법상의 법인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 협동조합의 농지소유는 허가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

3.3.3. 소득세 감면 및 지원혜택 관련 법제도

가. 농업법인의 조세에 대한 감면대상 포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동일하게 법인세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당소득세 면제의 혜택이 있다.²⁰⁾

협동조합도 농업법인에 해당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도 법인세법상에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대한 검토와 동일한 인정을 받기 위한 개정이 요구 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의 범위에 농업법인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법상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에 속하는 협동조합은 현재 법상 적용이 가능하나 ‘농업조합법인 협동조합’의 경우는 관련규정 및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

20)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68조

<표 76> 협동조합의 농업법인 포함에 따른 세금감면 제도개선 검토

관련혜택	관련법	개정사항
농업소득 및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세및특례제한법 66, 68조	'농업조합법인 협동조합' 추가
법인에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할 시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배당소득세 면제(감면)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및특례제한법 106조 1항 3호	대통령령에 포함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대통령령에 포함
비료, 농약, 사료 등 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나. 개별법 협동조합의 과세지원제도 및 협동조합의 포함가능성

현재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관련되는 세금감면의 혜택은 직접적 농업경영에 대한 혜택보다는 해당하는 조합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를 이룬다.

<표 77> 개별법 협동조합의 과세지원제도

관련혜택	관련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법인세 과세특례(단일 9%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3.3.4. 관련 기타규정의 개정 예시

현재 관련법 상에서 법의 적용대상을 생산자단체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조항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생산자단체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데 협동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할 경우 관련 조항의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78> 생산자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의 현황

관련법	현행 생산자단체 인정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관련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인삼산업법	농협법상 인삼관련 품목조합 및 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관련 법인

3.3.5.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

가.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자격요건 추가

기존의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도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공통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법인에 협동조합이 포함된다면 ‘협동조합’에도 유사한 공통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시규정에 농업회사법인과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참여구성원 중 농업인의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서류(농지원부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총자산 등 경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현황과 관련된 최소요건은 현재 농업법인에 대한 공통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실시규정에서 기존의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농업인 참여요건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의 한 유형으로 별도의 법인을 지칭한다면 그 조합원의 참여요건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 반면 농업법인의 새로운 법인격이 아닌 기존의 협동조합을 동일하게 사업대상으로 한다면 각 사업에서 기존의 농업법인에 동등한 수준의 농업인 참여 조건을 제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표 79> 농림사업시행지침상 영농법인의 확인사항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시행 2012.1.1, 훈령 제 280호) 제48조의 별표 4 관련]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략)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족자가사유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개정 2010. 12. >

4.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관련 법·제도정비 방안

4.1. 협동조합과 농협의 협력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4.1.1.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에 타 협동조합들과의 협력 사업을 명시

협동조합의 원칙중 ‘협동조합간의 협동’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이라는 사회 속에서 가장자원이 많이 가진 농협과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이 지역전체의 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부분에서 중요하다.

현재 농협법에서는 지역조합 및 타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규정하는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타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농협법에서 지역농협의 사업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협동조합간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표 80> 농협법의 개선검토 (협동조합간 협동)

현행	개선사항
<p>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6.9]</p>	<p>(중략) 협동조합기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에 대하여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표 81> 지역농협의 조합원관련 사업의 내용

1. 교육·지원 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가. 농협법의 조합원 가입규정에 농업법인 협동조합을 포함

영농조합법인은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농협의 사업이용이 가능하다.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의 협동조합간 협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협법상의 지역농협 조합원규정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의 형태로 설립이 되거나 그 특성이 기존의 영농조합법인과 유사

할 때 관련 조건에 따라 포함되도록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법인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들도 농협과의 사업이용 및 지원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협의 가입조건으로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생산자단체로 인정여부에 따라 판단 가능하다.

<표 82> 농협법의 개선검토 (조합원의 자격)

현행	개선방향
<p>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p> <p>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p> <p>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조합법인 협동조합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p> <p>③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중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업경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5. 농업분야 정책의 협동조합 활용을 위한 방안

5.1. 정부지원사업 수행주체로 협동조합 도입 검토

5.1.1. 지역기관협력 사업조직 법인화시 협동조합 주체의 도입

김정호 외(2005)는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에서 농산업클러스터가 사업체로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조직의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지역단위의 연계사업의 경우 법인화는 통한 클러스터 사업과 같은 방식의 정부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농림사업 지침상 기존 지역식품전략사업(클러스터사업) 등의 추진시 사단법인 등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학관연의 기관 및 법인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시행지침에는 지원자격으로 법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사단법인을 권장하도록 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대규모의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운영상 여러 어려움이 발견된다. 참여 개별조직에게 지원들을 하면 원심력이 작동하여 사업의 집중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고, 현재의 체제로는 사업단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으로 만들면 법인의사결정의 개인화가 될 우려가 있다.

<표 83> 지역전략식품사업시 지원자격 및 요건

<p>2. 지원자격 및 요건</p> <p>○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p> <p>◆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범위 : 복수 시·군·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 사단법인 권장 - 역할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에는 다수의 주체 및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에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 위원회에는 산·학·연·관 관계자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관에 명시 · 지역농협 및 기 구성된 개별 농림수산 단체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p>◆ 농어가 계열화, H/W이용 제품생산, 마케팅·유통 등을 전담할 자회사 권장</p>

따라서 공공성을 중시하는 법인의 형태가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직접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단순한 협의적 기능 위주로 운영이 된다.

따라서 참여자의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조합도 클러스터 사업의 좋은 법인 형태가 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1인1표의 민주적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업이용에 따른 수익의 배당도 가능하다.

5.1.2.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체로 협동조합 육성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마을 등의 지역개발 사업, 지역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운영주체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조직할 시에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

되며 마을사업시 주민의 복지 및 도농교류 체험으로 사업을 확대시 그에 맞는 법인격이 필요하게 된다. 향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시 설립주체에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교육 및 컨설팅 부분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간의 연합회를 구성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마을간 연합회 조직 또는 마을 법인간의 협동조합설립을 통한 중간조직의 육성 과 일부 지원기능의 이관 및 권한부여도 동시에 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마을단위의 사업을 추진시에 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간 협동조합연합체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사업주체 선정시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부여, 마을단위 사업의 수행시 사업지침에 법인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안내 등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 협동조합을 통한 운영의 우수사례 및 장 단점 분석 등의 연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84>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안전행정부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의 설립 촉진 및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용 사례</p> <p>□ 협동조합화 촉진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안: 마을기업 선정 대상에 사업체의 법인격 취득 및 자기자본 출자비율(자부담 비율)을 의무화※ 마을기업은 자본과 인력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출자 조합원이 5인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함- 2안: 마을기업 평가 및 재심사 기준에 신규 사업체의 법인격 취득과 기존 사업체의 협동조합 전환 등 협동조합형 조직에 대한 가점 부여※ 현 평가기준 및 배점: 공동체 구성 10점, 사업계획 적절성 10점, 재정건전성 20점, 자립경영 가능성 30점, 일자리 창출 30점
--

5.2. 농업 생산가공 유통영역 협동조합 활성화

5.2.1. 농협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개선

협동조합과 농협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는 농협이 신규협동조합에 대하여 인큐베이팅 및 자금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신규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사업 중 일부를 농협의 사업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에서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농협법에서 협동조합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협의 사업지침상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5.2.2. 소규모 영농형 생산협동조합의 육성

우리나라도 농촌의 노령화가 진행되며 마을이 점점 과소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을의 농업의 유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본의 집락영농의 사례와 같이 농촌마을의 농지에 대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형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경우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협동조합들과 연대를 가지며 특히 농협과의 협력을 통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에 대한 판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로 개입들이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다. 마을단위 생산협동조합의 설립과 연구는 일본의 집락영농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만약 마을단위 생산협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운 생산자들은 시군단위로 우선 모이는 것도 가능하다.

5.2.3. 농가등록제의 포함대상고려

농가등록제의 추진 목적은 정책대상을 보다 유형화하여 구분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하여 정책사업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주요 정책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하고 있다(농식품부 홈페이지, 2013) 향후 각종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을 농가등록제와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5.3. 농촌 자원활용 및 서비스제공 측면 협동조합 활성화

5.3.1. 귀농인력의 협동조합 조직화

귀농하는 도시민의 경우 초기 농지의 구입도 어렵고 개인이 영농에 전문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정착하기에 부담이 크다. 귀농사업시 귀농인간 또는 귀농지역의 마을주민과 신규 귀농희망자간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들이 협동조합내에서 관련 활동경험을 쌓으면서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드는데 유리하다.

5.3.2. 농어촌 복지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협동조합 활성화

도시와 달리 각각의 마을로 주민들이 흩어져 있는 농촌의 특성상 노령자나 유아 등 특정한 계층으로 전문화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농촌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런 일을 하는 데 적합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로 초중학교, 보건지소

등 정부의 각종 공적기관의 서비스가 농촌으로부터 이탈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시군마다 만들고, 면단위 농협과 주민들이 협력하여 농협사무실에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때 일부 비용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등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이 수반되면 목적 달성에 유리할 것이다.

5.4.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 간접지원

5.4.1. 협동조합 교육과정의 신설

농촌지역 협동조합활성화의 가장 많은 정책수요는 협동조합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 임직원 및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중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외부 강사에 의한 특강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관련기관에서도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모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행정기관단위에서는 협동조합교육을 위한 자료개발 및 기초연구를 실시하며 협동조합교육과정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을 실시하며 일부 협동조합 교육과정은 직접 개설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 중 협동조합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현재 농업관련 교육에 대한 사업과 시행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의 교육과정에 협동조합

관련 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5.4.2. 지역별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지원

지역별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조직의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마을 사업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기능에 협동조합의 육성 및 교육을 진행할 인력 및 예산의 신설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농업회의소와 같은 농업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서 농촌지역의 자주적 협동조직에 대한 간접적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5.4.3. 지역협동조합기금의 조성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중 하나는 사업초기 원활한 자본의 조달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지역내 농협, 신협 등의 개별법의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지역협동조합기금'을 지역마다 만들고 이를 신규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다. 그동안의 설립추이를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농촌지역에서도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속화 될 것이다. 특히 기존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는 달리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 5인 이상이면 쉽게 설립할 수 있고, 희망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시행 이후 농촌지역에서도 설립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정책 및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1.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방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우리나라 농촌에는 다양한 협동조직이 존재하였다.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조직들은 농촌지역에서 농업생산 및 유통 등 농업분야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그 목적 및 운영상 협동조합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지만 실제 협동조합적 운영이라는 기대에 부응 못하거나 농협 등의 조직과 경합관계에 있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들 농촌지역 협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농협과 영농조합법인과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이들 조직 간에 연계를 통한 지역농업의 조직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농업생산분야의 협동조직간 협력이라는 주제와 함께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논의가 농협의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농촌지역에서 기존의 조직 외에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못했으며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중 농업 및 농촌지역산업 관련 협동조합은 전체 국내의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20%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협동조합의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하는 협동조합이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84%정도를 차지하였고,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이 11%, 복지·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동조합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출자금 또한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동조합들 중 농업인이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적으로는 기존의 농업법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타나는 협동조합들은 농업생산 및 유통분야에서 주요한 생산자단체의 유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농협과 농업법인에서 경합하였던 경쟁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 및 설문을 실시한 결과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에서는 현재 농업법인과 같이 법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농촌의 기존 협업적 조직과 같이 신설되는 협동조합에도 동등한 법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크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으며 이를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법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기존 경제조직과 동등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외에 그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 교육과 컨설팅과 같은 간접적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향후 농협과의 관계에서도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적 관계를 우려하는 의견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의 유형별 역할과 기대효과

농업분야 및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의 모습을 추측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지역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협동조합이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농촌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의 전체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협동조합을 통하여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를 지역사회의 기여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협동조합의 모델은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업생산유통분야, 둘째는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분야, 셋째 농촌사회서비스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생산·유통분야의 협동조합은 추구하는 시장에 따라 그 운영방식과 경영환경이 다르다. 먼저 일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기존과 같이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 가공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이며 지역의 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우 농협과 판매 및 마케팅 분야의 협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농협에서도 현재 판매사업의 핵심조직으로 육성하고 있는 공선출하회 등 출하조직을 협동조합으로 법인화하고 이를 지원하여 농업생산자의 조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마을단위에서는 주민들이 생산공동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마을의 농가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농업생산·유통분야에서 소규모 농사조합법인과 농협의 협력적 운영모델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마을에 협동조합적 조직체를 통한 공동영농으로 개선을 꾀하고 있다. 공동의 생산을 통한 농지유지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또한 농협이 이러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 및 농산물의 유통 판매마루트 역할을 하면서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가능하다. 소규모 생산협동조합과 농협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농업의 조직화에 기여하고 또한 공동영농을 통한 휴경지의 방지, 소농구조의 한계극복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중에서 기존의 조직과 달리 차별적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직거래를 하거나 특수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소비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다중이해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경우를 설정할 수 있다.

농산물의 생산 외에 농촌의 지역재성을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지역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마을단위의 공동사업형태로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역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화가 가능하다. 마을별로 주민의 참여와 사업이용을 전제로 하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추

진하고 협동조합들은 시군단위에서 연합회를 구성하여 역할분담을 통한 지역전체가 연계된 사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 수요자인 일반 도시민도 협동조합에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구성 할 수 있다.

농촌의 사회서비스 분야도 협동조합의 중요한 영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인구의 과소화 및 마을의 분산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상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담당해줄 지역종합복지협동조합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인 주민이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행을 위탁받을 수 있다. 기존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농협도 기존의 교육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아웃소싱하여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새로운 협동조합의 자체적 사업모델이 잘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농협이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일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농협 등 금융협동조합은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출, 협동조합육성기금의 조성 등에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협동조합 경영의 노하우를 신규 협동조합에 전파하여 협동조합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넷째, 사업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역할분담을 통하여 상호 취약한 기능을 보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건강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정책제도 개선방안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농업분야 및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러한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농협, 영농조합법인과 불필요한 경쟁관계를 줄이고 협력적 관계형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총체적으로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지역 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 이다. 첫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기존의 농업법인 등에 비해 정책사업에 참여하거나 농업생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도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도 및 관련사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농촌지역 협동조합의 운영모델에서 제시한 협동조합들이 확산되기 위한 타 법상의 개선사항과 지역 내 협동조직간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육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 정비의 사항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 관련 사업에서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정책대상화 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시하고 있는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방안과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방법, 각각의 정부정책 사업별로 협동조합을 대상화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법률의 개선과 함께 일정 조건의 협동조합을 농업관련 생산자조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기타 관련법들의 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농지의 소유문제, 세금감면 및 혜택의 범위, 생산자단체로 인정시

다른 법상의 법적 대상포함에 대한 법조항의 검토 및 개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농협 등의 조직과 지역내 협력을 위한 사항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협력사업의 의무를 명시하여 이를 유도하고 협동조합간 조합원 가입 및 출자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정책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각종 농업 및 농촌관련 사업에서 사업주체간, 농업인 및 지역주민의 공동의 참여를 요하는 사업에서 법인화의 유형으로 협동조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로 협동조합 운영의 이점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이를 권장하도록 시행지침 및 업무규정상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을 통하여 생산영역에서 주체간 조직화를 추진하는 부분,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분야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촌의 복지 분야에서 주요사업별로 협동조합형태의 주체를 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역량개발은 협동조합 자체의 역량강화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지역내 협동조합의 동반적 수준향상과 기여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농업관련 산업 및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지역에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구성원 자체의 노력과 제도적 지원이 조화롭게 잘 어울려져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자율성의 제한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 취지와도 어긋나는 방향이며 현재 조건에서 협동조합들이 자발적인 발전을 하는데 지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성장과정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주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영향 및 제도정비 방안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일반용)

본 설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연구소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농업 및 농촌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영향을 전망해 보고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운영되고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농업 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과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드림

연구기관: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02-3474-9217)

김원경 팀장 (bestshine@naver.com)

응역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정책과

협동조합 기본법 :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누구나 5인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신고하면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도 농업 및 농촌지역의 관련 업종에 대하여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안내 자료 (<http://www.cooperatives.or.kr/>)

다음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다음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농촌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일이다.

-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3. 기본법으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어느 측면에서 농촌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선택)

- ① 일자리 창출
- ② 지역경제 활성화
- ③ 각종 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
- ④ 지역 특산품 등의 판로확대
- ⑤ 다양한 자원의 결합을 통한 농산업의 복합화(6차산업화)
- ⑥ 귀농귀촌의 등의 외부인구의 유입 확대
- ⑦ 주민의 경제적 참여 활성화
- ⑧ 농촌 복지 및 사회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 ⑨ 기타

4. 기타를 선택하신경우 간략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하 응답)

- ①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부족
- ②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부족
- ③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실질 수요가 없음(지역민의 설립 필요성 낮음)
- ④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책 및 제도
- ⑤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역량부족
- ⑥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지도자 및 활동가 부족
- ⑦ 협동조합 설립절차 관련 정보의 부족
- ⑧ 지원기관의 부재로 서비스 제공의 애로
- ⑨ 기존 지역농협의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에 따른 신규진입의 장벽
- ⑩ 기타

6. 기타를 선택하신경우 간략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다음 중 어느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대로 3가지 응답)

- ①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활동
- ② 협동조합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직접지원
- ③ 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훈련 사업
- ④ 협동조합과 관련된 컨설팅·자문 제공
- ⑤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신청시 우대 (가점부여 등)
- ⑥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공공거래시 간접지원
- ⑦ 일반법인 대비 세제상의 혜택 부여 제도개선
- ⑧ 각종 규제사항에서 예외인정 제도개선
- ⑨ 기타

8. 기타를 선택하신경우 간략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감면 및 유류면세 등), 정부정책사업의 주요 대상, 농지의 소유가능

9. 농촌지역에서 기본법으로 설립되는 농업관련 협동조합에 현재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같이 동일한 법제도적 지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일한 수준으로 필요하다
- ② 동일한 수준은 아니나 일부 필요하다
- ③ 필요없다
- ④ 잘모르겠다

농업분야 협동조합에 기존 농업법인과 같이 제도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경우 다음에 제시된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그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동일한 자격권한을 가지는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특정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

-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11. 각각의 정책사업별로 사업대상자로 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지침 및 규정을 개정하여 동등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12.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규정 및 고시사항을 개정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자단체의 범위 : 농협등의 개별법 협동조합, 장관이 고시한 일정조건 이상의 농업법인, 자조금 단체)

-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13. 위의 사항외에 정책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향후 기본법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지역농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 ② 상호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15.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기존의 지역농협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실제 현실조건상 경쟁관계가 조성 될 것이다
- ② 실제 현실조건상 협력적 관계가 구축 될 것이다
- ③ 상관이 없을 것이다

16. 위 응답과 같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기타 과제와 방안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문항은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시고 계신분들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다음중 향후 가입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신(또는 현재 가입된) 협동조합의 유형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농산물 공동생산, 가공,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②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사업 협동조합
- ③ 마을개발 및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 ④ 농촌지역 서비스 공동이용 협동조합(가사,보육,문화,취미활동)
- ⑤ 물품의 공동구매를 위한 소비협동조합
- ⑥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지원, 지역자원 보호 등)
- ⑦ 기타 ()

응답자의 기본특성 파악을 위한 부분입니다.

19. 귀하께서 하시는 일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농업농촌관련 연구자(대학 및 공공 및 민간 연구소,컨설팅 업체 등)
- ② 농업인(경영주 및 가구구성원)
- ③ 농업관련 법인 종사자(농업법인 및 농촌지역 일반회사)
- ④ 농협 종사자(지역농협 및 중앙회, 관계사)
- ⑤ 행정공무원(중앙 및 지자체)
- ⑥ 관련단체 활동가(농업관련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
- ⑦ 기타 ()

20. 다음중 해당하는 거주지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시군단위 읍면동지역 거주?
- ② 특광역시 동지역 거주
- ③ 기타 ()

21.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30세 미만
- ② 30세이상 40세미만
- ③ 40세이상 50세미만
- ④ 50세이상 60세미만
- ⑤ 60세이상

2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③ 대졸(학사)
- ④ 석사
- ⑤ 박사이상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 및 농촌관련 일반 협동조합 인터뷰 질문지

일 시		면담자		연락처	
명 칭					

<p>연구목적에 대한 설명</p> <p>저희 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민간협동조합 연구소로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하여 전화를 드렸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기 위한 개선사항들을 탐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현재 하시는 사업에 대한 질문</p>

<p>현재 협동조합 설립을 하신후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입니까?</p>
<p>기존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동등한 법적제도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농법인의 경우 세제혜택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각종 정부의 정책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p>
<p>현재 법이나 제도적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p>

현재협동조합 설립 준비과정에서 어려우신 점은 무엇입니까?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내에서 농협과 사업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합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이점이나 기대하시는 효과가 있습니까?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타사항

참고문헌

- Cook(2002), “미국농업협동조합의 미래 - 신제도화과의 관점에서”, 『협동조합 주요 이론』, 농협조사부.
- 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 관련 정책자료, 기획재정부.
- 김기태(1994), ‘단위농협의 발전방향’, 서울대농업정책연구회보 9호
- 김기태(2002), ‘지역농업조직화론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이수일추모논문집”
- 김기태(2010), ‘이종협동조합간의 협동과 농협의 역할’, 농정연구포럼 2010년 12월 발표문, 농정연구센터
- 김기태(2011), ‘지역농협의 역할제규정과 지역종합센터 구상’, GS&J 시선집중 119호.
- 김기태(2012a), ‘농식품 생산유통가공영역의 새로운 협동조합 전망과 농협과의 관계’, 농정연구포럼 2012년 4월 발표문, 농협중앙회조사부(2002), 『협동조합 주요이론』, 농협중앙회 .
- 김기태(2012b), 『신규 협동조합 유형의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 김수석 외(2006),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2005), 『지역농업 클러스터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2010), 『마을공동사업체 법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외(2011),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2012), “12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6.8.)
- 농림수산식품부(2013), 「201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경제연구소(2008a),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이해 교육교재』, 농협경제연구소.
- 농협경제연구소(2008b). 「협동조합의 구조문제와 해결방안」. 『CEO 포커스 194호』
- 농협중앙회(2009),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이해」
- 농협중앙회조사부(2002), 『협동조합 주요이론』, 농협중앙회

- 박광서(2007), “농업생산조직과 지역농업조직화 - 일본의 경험”, 전남대학교 출판부
- 박범용(2012), ‘협동조합기본법 긴급해설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박진도(2009), 「농협개혁의 목표와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시선집중GS&J 75호』, GS&J
- 이수행 외(2009), 「협동조합의 개혁방향」, 『경기개발연구원리포트』, 경기개발연구원
- 이정환 외(2009), 「농협개혁: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방향」, 『시선집중GS&J 75호』, GS&J
- 임중환 외(2011), 『우리동네 주치의, 의료생협 이야기 - 가장 인간적인 의료』, 스토리플래너
- 조세훈(2009), 「사회적경제운동의 과제와 원주지역의 사례」, 한국의 농촌형 사회적 기업 확대전략 포럼 자료집, 지역재단
- 조완형(2010), “생활협동운동과 생활협동조합활동”, 모심과살림포럼 발표문 2010. 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KRILA 포커스 51호
- 한국법제연구원(2012).“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 분석 연구”, 기재부 연구과제 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 조사 연구”, 기재부 연구과제 보고서
- 코야마 료타(2010), ‘일본 농협의 협동조합간 협동과 지역사회 연대’, 2010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협동조합학회
- 한호선 역(1986), “협동조합 지역사회로 가는 길”, 협동연구사(하스미 다케요시 저)
- 황의식 외(2012),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법인의 역할강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명철 (2010).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NHERI 리포트 제108호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
- JA-IT통신 창간호(JA-IT研究會通信) (<http://ja-it.net>)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발행처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5층

(전화) 02-3474-9217

(홈페이지) www.coops.or.kr

-
- 본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연구용역 발주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